

#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 농업

윤 호 섭    연구위원  
어 명 근    책임연구원

연구 담당자	담당 분야
윤호섭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 분석 및 집필
어명근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분석 및 집필

## 머 리 말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라 외형적인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교역국도 다원화되었으며,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날로 개방화 압력이 높아지는 등 국민경제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의 WTO체제 출범 및 NAFTA, EU, APEC 등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동참하면서 양적으로 확대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 법규 및 관행 등을 국제수준, 더욱 정확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과 개방을 통하여 성장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경쟁의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분담해야 할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가입문제가 대두되어 1996년 가입 예정으로 있다. 지난 5월 멕시코의 가입으로 25개 회원국으로 늘어난 OECD 가입에 대비하여 정부 각 부처는 우리 나라의 가입에 따른 준비와 절차 그리고 영향과 효과 등에 관한 평가와 예측을 위해 관련 위원회와 접촉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아직 OECD 가입에 대비한 준비가 늦어서 금년말에야 농업위원회에의 옵저버 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 수락해야 하는 자유화의무의 하나로서 국가간에 직접투자와 자본거래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약의 수락은 외환, 통화량, 이자율 등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와 생산과 수출입 등 실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에서도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과 농지 및 임금 등 요소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보고서는 자본이동자유화가 우리 나라의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에 관해 다룬 최초의 연구성과로서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시 농업분야에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참고자료로서 이용되고, OECD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농업부문의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영일**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방법 및 내용 .....	4
3. 연구의 한계 .....	5
제 2 장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개요	
1. 주요 원칙 .....	7
2. 주요 내용 .....	9
3. 회원국의 유보 내용 .....	18
4. 일본의 경험 .....	23
제 3 장 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적용효과 분석	
1. 자본이동 자유화의 개념과 의미 .....	28
2. 자본자유화의 효과분석 모형 .....	33
제 4 장 우리 나라의 자본자유화계획 및 관련 제도	
1. 자본자유화 현황 .....	40
2. 농업부문 외국인 투자자유화계획 .....	42
3. 외자 유입 전망과 거시경제적 대응방안 .....	45
4. 자본자유화 관련 제도 및 법규 .....	49

제 5 장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	
1. 농업부문 투자수익률 비교 및 투자 전망 .....	56
2. 자유화 유보업종과 외국인 투자의 영향 .....	60
3. 투자자유화 업종별 투자 가능성 및 파급효과 .....	78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08
2. 결론 .....	111

## 표 목 차

<b>제 2 장</b>	
표 2-1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항목 수	10
표 2-2 회원국의 유보항목 현황	20
표 2-3 직접투자 및 그 청산과 부동산 거래의 유보 현황	22
 <b>제 3 장</b>	
표 3-1 농업부문의 상대적 요소투입계수	38
 <b>제 4 장</b>	
표 4-1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41
표 4-2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	44
표 4-3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 자유화 현황 및 계획	45
표 4-4 연도별 자본수지 전망	46
 <b>제 5 장</b>	
표 5-1 한일간 농업부문 투자수익률 비교	59
표 5-2 한일간 농지가격 비교	60
표 5-3 국민경제와 쌀	69
표 5-4 농가소득과 쌀 소득	70
표 5-5 도시가계비와 쌀 지출비(월평균)	70

표 5- 6 양곡도정공장 현황 .....	72
표 5- 7 한육우의 생산액 .....	75
표 5- 8 고구마 및 감자 생산량 .....	77
표 5- 9 우리 나라 젓소사육 규모별 현황 .....	80
표 5-10 양돈업 규모별 농가 현황.....	85
표 5-11 우리 나라 양계업 규모별 현황.....	89

## 그림 목 차

### 제 3 장

그림 3-1 해외자본 유입의 흐름도 .....	34
그림 3-2 생산요소의 증가와 생산량.....	35
그림 3-3 생산요소 증가와 요소가격.....	39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외형적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그 결과 우리 경제도 선진국 진입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에 힘써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즉,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의 가입론이 대두되고 있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의 활용으로 경제운용 방식의 효율화, 선진화를 도모하여 대외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면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국제적인 역할 증대 및 수출시장의 확보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OECD 가입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내실화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OECD 가입의 의미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OECD 가입에 수반되는 의무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은 OECD 가입시 우리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OECD 가입시 의무사항으로는 통상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의 의무등이 있다. 일반적 의무는 OECD의 목적을 지지하고, 제규약상의 의무를 수락하며, 분담금을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고적 의무는 GATT 11조(수출입 수량제한에 관한 조항으로써 우리나라는 1990. 1. 1. 이행) 및 IMF 8조(경상수지에 대한 제한 철폐,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및 외국 보유 자국 통화의 교환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1988. 12. 이행)를 수락할 것과 저개발국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원조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자유화의 의무와 관련된 OECD 자유화 규약은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의 양대 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OECD는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써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EC 지침을 제외하고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위해 다국간에 적용되는 유일한 제도이다. 1961년 이사회에 의해서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채택된 동 규약은 보다 자유로운 국제 무역과 투자 및 자본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이를 통하여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그 근본 취지로서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가입시 일부 유보 또는 적용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규약의 주요 원칙으로는 일정기간 자유화를 유보 또는 적용면제 시켜 주는 점진적 원칙과 대내 직접투자와 금융관련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국인대우 원칙, 한 회원국의 자유화 조치가 모든 회원국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무차별 원칙등이 있다. 이와함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일단 자유화하면 다시 제한할 수 없도록 재유보가 불가능한 항목(List A)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유보가 가능한 항목(List B)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의 농업정책은 농업생산의 증대 및 유통구조의 개선과 이를 통한 농가소득의 향상에 정책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검토하여 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대두된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중 직접투자 부문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통하여 외국자본이 국내에서의 농업생산은 물론 유통과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현재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중에서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으로 검토된 농업부문의 업종은 모두 36개 업종이었다. 1994년 6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농업부문에서는 보통작물 생산업, 육우 사육업, 곡물도매업, 곡물도정업, 고기도매업, 전분제조업 등 6개 업종과 부분 개방되는 곡물소매업을 제외하고는 1997년까지 모두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에 포함된 농업부문 업종의 구체적 내용과 외국인 투자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영향 등을 검토, 전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과 농업 소득, 농업생산요소의 가격 및 농산물 가격등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자유화가 우리나라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여 OECD 가입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각 조항을 수락 또는 유보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본이동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연구에서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변화 중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전반적인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농지, 임금, 이자율 등 요소가격의 변화와 품목별로 생산 및 유통의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업계의 전망을 포함한 다각적인 견해를 수집, 정리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서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여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자료는 자본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및 재무부의 “재정금융통계”와 농림수산부의 “농림수산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는 문헌조사를, 자본자유화의 파급효과는 기존의 모형에 우리 나라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먼저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주요 원칙과 항목별 내용을 살펴본 뒤 기존 회원국별 유보 항목의 내용을 개관하여 우리나라의 OECD 가입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자본 자유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서 우선 이론적으로 자본 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Ruffin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생산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정태분석으로 도출하고 우리 나라의 생산요소 집약도와 농업부문의 상대적 요소투입계수를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중간요소’를 식별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야기하는 요소가격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실제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 전망을 위해 외국 자본의 부문별 업종별 국내 직접투자 실태 및 현황과 향후 투자가능성 등을 전망하고 농업부문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의 현황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유화와 관련된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농업부문내 주요 업종별 외국인 투자 전망과 예상되는 효과는 먼저

농업부문 전체의 투자 수익률을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농업부문 투자가능성을 전망하고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상 자유화가 유보된 업종에 대해 국내 생산 및 시장 여건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의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유보의 타당성을 살펴 보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업종에 대해서는 주요 업종별 생산자 단체와 협회 그리고 생산 농가를 비롯한 업계 방문, 면담을 통해 국내 생산 및 소비실태와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대한 이들의 견해와 전망을 요약 정리하여 외국인의 실제 투자가능성, 과거의 유사한 경험,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의 격차, 유통 및 가공과 관련된 격차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 등을 전망하였다.

### 3. 연구의 한계

UR 협상과 관련하여 농업부문에서도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생산량(또는 금액) 감소 및 농가 피해액 추정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허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농업생산 및 가공과 유통부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기술의 도입과 전파, 가공 및 마케팅 관련 서비스의 개선, 경쟁의 격화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영세 생산 농가의 도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초래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자유화의 문제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요 농산물 품목별로 국내 및 해외 생산 현장과 소비자 및 시장과 관련 업계를 세밀히 조사하고 비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가능성과 예상되는 효과 등에 대해 예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본연구에서는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부문과 시설 원예, 종자 등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몇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국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과 효과를 조사,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이동과 관련한 농업분야의 연구가 국내에는 전무한 상태로서 관련 자료 또한 미흡하여 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와같은 제약은 자본이동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시점에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연구는 자본이동과 관련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연구에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제 2 장

#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개요

### 1. 주요 원칙

OECD의 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자유무역의 확대에 요약된다. OECD는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회원국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금융 및 통화안정을 위한 정책,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발전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OECD 회원국의 3대 의무중의 하나로서, 가입희망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후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있어 가입시 주요 쟁점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으로 좁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동 자유화 규약들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원칙과 함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961년 12월 이사회에 의해서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채택된 동

규약들을 통하여 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 투자 및 자본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이를 통하여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규약의 기본 원칙으로는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 대우(待遇), 무차별 대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원칙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점진적 자유화 원칙은 회원국이 동 규약을 집행함에 있어 전면적인 자유화 방식이 아닌 자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당면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국은 자유화규약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반드시 자유화할 필요는 없으며, 자국의 사정에 따라 자유화 항목중 일부를 일정기간 자유화 유보(reservation) 또는 적용면제(derogation)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보는 자유화 항목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의무면제를 받는 것으로서, 자유화 조치와 관련한 자본이동자유화규약 협정문 제2조에 자유화 의무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신설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신설항목이 기존 항목과 관련하여 자유화 의무가 확대되는 경우 및 자유화 의무가 당해 회원국에 대하여 신규 적용이 개시되는 경우 자유화 의무를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보를 받은 회원국은 OECD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보의 계속여부와 그 사유를 OECD에 통지해야 하며, OECD는 이에 대한 심사를 하는바, 심사의 목적은 회원국이 유보를 철회하도록 적절한 제안을 하는 데에 있다(협정문 제12조). 적용면제는 자유화 항목 가운데 특정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화 항목 모두에 대하여 자유화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협정문 제7조(면제조항)에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 및 재정금융상태에 비추어 자유화 조치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경제 및 재정금융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유화 조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동 조항에 나타나 있다. 즉, 규약 적용의 전면적 적용면제도 가능하며,

이행중인 규약에 대해서도 철회 또는 일시적 정지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제13조(적용면제 규정에 대한 면제 통지 및 심사)에 따라 적용면제 조치를 받은 국가의 적용면제조치는 매6개월 마다 또는 OECD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또는 일자)에 OECD가 심사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 협정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직접투자 항목중 회사설립권 관련사항과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규약중 보험 및 금융서비스, 공공기업의 해외지사와 대리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항목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자회사, 지점 및 사무소등의 설립시 거주자와 동등한 대우의 부여 및 영업 범위에 대한 차별대우의 철폐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차별 대우 원칙은 한 회원국의 자유화조치는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협정문 제9조는 회원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무차별 원칙에 관한 것이며, 제10조는 무차별 원칙의 예외조항으로서 관세 또는 통화와 관련하여 특수한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은 제2조의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화 조치와는 별도로 별개의 자유화 조치를 동 체제의 타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함이 없이 상호간에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2. 주요 내용

1961년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의 특징은 적용 범위의 확대 및 강화로 볼 수 있다. 즉, 1961년 제정당시에는 대항목 기준으로 6개, 소항목 기준으로 33개였으나, 현재는 대항목 기준으로 16개이며 소항목 기준으로는 91개가 있다(표 2-1).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효과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본

표 2-1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항목 수

	대 항목	소 항목
1961년 제정	6	33
1964년 개정	14	69
1973년 개정	15	73
1993년 현재	16	91

이동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즉, 자유화하면 다시 제한할 수 없는 재유보가 금지되는 항목(List A)과 자유화하되 언제든지 유보할 수 있는 재유보가능 항목(List B)으로 구분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직접투자(LIST A)

#### 가. 비거주자(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 1) 완전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과 확장 및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 취득
- 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자본 참여
- 3)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 나. 거주자의 해외투자

- 1) 완전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과 확장 및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 취득
- 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자본 참여
- 3)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 2. 직접투자의 청산(LIST A)

#### 가. 거주자의 해외투자 청산

#### 나.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청산

### 3. 부동산 거래

#### 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거래

- 1) 건축 또는 구입(LIST B)
- 2) 매각(LIST A)
- 나. 거주자의 국외 부동산 거래
  - 1) 건축 또는 구입(LIST B)
  - 2) 매각(LIST A)
- 4.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거래(LIST A)
  - 가. 국내증권의 외국 자본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2) 외국공인 증권시장 상장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나. 외국증권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2) 국내공인 증권시장 상장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다.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거래
    - 1) 매입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2) 매각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라. 거주자의 국외에서의 거래

## 1) 매입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2) 매각

- ① 주식 및 기타 지분적 증권
- ②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당시 만기 1년이상)

## 5. 단기금융시장 거래(LIST B)

## 가. 국내증권 및 기타 증서의 외국 단기 금융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2) 외국공인 단기 증권시장 상장

## 나. 외국증권 및 기타증서의 국내 단기 금융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2) 외국공인 단기 금융시장 상장

## 다.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 1) 단기 금융시장 증권의 매입
- 2) 단기 금융시장 증권의 매각
- 3) 기타 단기금융증서를 통한 대부
- 4) 기타 단기금융증서를 통한 차입

## 라. 거주자의 국외거래

- 1) 단기 금융시장 증권의 매입
- 2) 단기 금융시장 증권의 매각
- 3) 기타 단기금융증서를 통한 대부
- 4) 기타 단기금융증서를 통한 차입

## 6. 기타 양도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의 거래등(LIST B)

## 가. 국내금융수단 및 권리의 외국금융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2) 외국공인 증권시장 상장

## 나. 외국금융수단 및 권리의 국내금융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2) 국내공인 금융시장 상장
- 다.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 1) 매입
  - 2) 매각
  - 3) 기타 자산과의 교환
- 라. 거주자의 국외거래
  - 1) 매입
  - 2) 매각
  - 3) 기타 자산과의 교환
- 7. 공동투자증권의 거래(LIST A)
  - 가.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증권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2) 외국 공인증권시장 상장
  - 나.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증권시장 참여
    - 1)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2) 국내 공인증권시장 상장
  - 다.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 1) 매입
    - 2) 매각
  - 라. 거주자의 국외거래
    - 1) 매입
    - 2) 매각
- 8. 국제무역 및 용역제공과 관련 있는 신용
  - 가.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해당거래에 참여하는 경우(LIST A)
    - 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 나.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해당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LIST B)

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9.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LIST B)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10. 담보, 보증 및 Back-up Facility 금융(LIST A)

가. 국제무역 또는 무역외거래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거주자가  
개입하는 자본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1) 담보 및 보증(LIST A)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Back-up Facility 금융(LIST B)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국제무역,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거주자가 당해거래에 개입되지 않은 경우

1) 담보 및 보증(LIST A)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Back-up Facility 금융(LIST B)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1. 예금계정거래

가. 비거주자의 거주자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LIST A)

1) 국내통화표시

2) 외화표시

나. 거주자의 비거주자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LIST B)

1) 국내통화표시

## 2) 외화표시

## 12. 외환거래(LIST B)

## 가. 비거주자의 국내거래

- 1) 외국통화를 가지고 국내통화의 매입
- 2) 외국통화를 얻기위한 외국통화의 매각
- 3) 외국통화간 교환

## 나. 거주자의 국외거래

- 1) 국내통화를 가지고 외국통화의 매입
- 2) 국내통화를 얻기 위한 외국통화의 매각
- 3) 외국통화간 교환

## 13. 생명보험(LIST A)

(생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송금)

- 가. 비거주자인 보험자로부터 거주자인 보험 수익자로의 보험금 및 만기가 도래한 확정연금의 송금
- 나. 거주자인 보험자로부터 비거주자인 보험 수익자로의 보험금 및 만기가 도래한 확정연금의 송금

## 14. 개인적 자본이동

- 가. 개인간의 대출(LIST A)
- 나. 증여 및 기증(LIST A)
- 다. 결혼지참금(LIST A)
- 라. 상속 및 유증(LIST A)
- 마. 이주자의 원거주국에서의 채무 변상(LIST A)
- 바. 타국이주자의 자산(LIST A)
- 사. 상금(LIST B)
- 아.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LIST A)

## 15. 자본의 실물이동(LIST A)

- 가. 유가증권 및 기타 자본적 권리증서
- 1) 수입

## 2) 수출

## 나. 지불수단

## 1) 수입

## 2) 수출

## 16.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봉쇄자금의 처분(LIST A)

## 가. 봉쇄자금의 송금

## 나. 봉쇄자금의 관계국내에서 사용

## 1) 자본적 거래

## 2) 경상거래

## 다. 비거주자간 봉쇄자금의 양도

이상이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상의 항목으로서 16개의 대항목과 91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어느 특정기업과 계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투자로서, 특히 해당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및 내국인에 의한 해외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투자는 투자의 목적이 투자국의 통화 및 금융시장에 간접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금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금액이나 기타 관점에서 투자국의 이익에 예외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투자의 청산(Liquidation of Direct Investment)은 직접투자에게 속하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청산 및 청산대금의 송금의 자유화에 관한 내용으로써, 외국인의 국내투자 청산과 거주자의 해외투자 청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Operations in Real Estate)는 직접투자나 직접투자의 청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하며,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거래 및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부동산 거래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증권(Securities on Capital Markets)은 주식 및 지분성격의 증권과 발행당시 만기가 1년 미만인 채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의미하며, 따라서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조항은 이러한 증권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단기금융시장 거래는 발행당시 만기가 1년 미만인 증권의 발행 및 상장과 거래의 자유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매매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Negotiable Instruments and Non-securitised Claims)는 대항목인 증권거래(IV),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V) 및 공동투자증권의 거래(VII)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매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등으로써, 여기에는 금융선물 및 옵션(Option)거래, 선도계약 스왑거래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투자증권(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은 증권 및 기타 자산에 관련된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투자기관에 대한 투자자 증서 및 지분 증서와 함께, 매매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등에 투자하는 기관이 판매하는 증권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상업거래 및 용역제공과 직접관련이 있는 신용(Credits Directly Linked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or with the Rendering of International Services)는 말 그대로 무역 및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거래로서, 여기에는 리스나 팩토링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Financial Credits and Loans)는 직접투자, 직접투자의 청산, 국제상업거래 및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 개인적 자본이동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담보, 보증 및 Back-up Facilities 금융(Sureties, Guarantees and Financial Back-up Facilities)은 독립적인 금융거래의 보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의 일종으로서 채권 및 어음발행 등에 대한 인수 협약 또는 보증으로 채권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금융수단이다.

예금계정거래(Operation of Deposit Accounts)는 은행의 당좌예금과 저축예금계정의 개설 및 운영의 자유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외환거래(Operations in Foreign Exchange)는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포함된 항목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제외한 그 이외의 외환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 통화선물 및 옵션(Option)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명보험(Life Assurance)의 항목에는 생명보험의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이전거래가 포함되고 있다. 개인적 자본이동(Personal Capital Movements)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개인간의 대부, 증여 및 기증, 결혼지참금과 같은 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의 실물이동(Physical Movement of Capital Assets)은 증권 및 기타 자본적 성격의 자산에 대한 권리증서(Other Documents of Title to Capital Assets) 및 지불수단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내용이다. 비거주자가 보유한 봉쇄자금의 처분(Disposal of Non-Resident-Owned Blocked Funds)에서 봉쇄자금은 다른 회원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금이지만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회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봉쇄하는 자금등을 말한다.

### 3. 회원국의 유보 내용

OECD 회원국이라고 해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모든 항목을 자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경제여건 및 사정에 따라 수락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일부 유보하고 있다. 다만, 룩셈부르크만이 1989년에 직접투자에 대한 부분유보 사항을 전면 철회함으로써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모든 항목을 자유화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특정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유보를 하고 있다. 특히, 직접투자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완전유보 또는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접투자항목의 유보율은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OECD 가입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자유화 범위와 관련한 문제, 즉 수락 또는 유보 범위와 관련하여 신중하고도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직접투자 부분의 자유화(또는 유보)범위와 관련한 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OECD 회원국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유보율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OECD 회원국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대한 자유화율(또는 반대로 유보율)을 살펴 보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항목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 부분유보이건 또는 완전유보이건 유보된 항목의 수를 전체 항목의 수로 나눈것을 유보율로 보는 것이다. 즉, 자유화 유보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유보율} = \frac{\text{부분유보항목 수} + \text{완전유보항목 수}}{\text{자유화대상항목 수}}$$

이와 같은 유보율 개념에 의거하여 룩셈부르크(Luxemburg)를 제외한 회원국의 유보율을 살펴볼 때 1992년 현재 그리스(Greece)와 포르투갈(Portugal)이 각각 80.2%와 65.9%를 기록함으로써 유보율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Spain)과 아일랜드(Ireland)가 46.2%와 38.5%를 기록하고 있고, 터키(Turkey)의 유보율은 22%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의 유보율은 20%미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덴마크(Denmark), 네델란드(Netherland) 및 영국(United Kingdom)등의 유보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유보율은 17.1% 수준이다.

대항목을 기준으로 회원국의 유보현황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직접투자 항목을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즉, 직접투자 항목의 유보율이 다른 항목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6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된 직접투자 항목의 국가별 유보를 보면,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갈 및 터키가 6개 전항목에 걸쳐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스위스가 1개 항목을 부분유보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2 내지

표 2-2 회원국의 유보항목 현황

	I	II	III	IV	VI	VII	VIII	VIII	IX	X	X I	X II	X III	X IV	X V	X VI	유보항목수	유보율(%)
항 목 수	(6)	(2)	(4)	(8)	(12)	(10)	(8)	(3)	(2)	(8)	(4)	(6)	(2)	(8)	(4)	(4)	〈총 17개 항목〉	
호 주	3		1	4	4	4		1	1								18	19.8
오스트리아	3		1	2	2						2	1					11	12.1
벨 기 에	2			2	2	2	2										10	11.0
카 나 다	3		1	1													5	5.5
덴 마 크	1		1														2	2.2
핀 란 드	3		1	2	1	1	2										10	11.0
프 랑 스	3			2	2		2										9	9.9
독 일	2			3	2												7	7.7
그 리 스	6	1	2	8	12	10	5	1	2	6	3	5		5	3	4	73	80.2
아일랜드	6		2	1	3	4	2	1	2	4	3	3		2	2		35	38.5
이 태 리	2						2								2		6	6.6
일 본	6			1	1												8	8.8
네델란드	3																3	3.3
뉴질랜드	3		1	1											2		7	7.7
노르웨이	3		1	1													5	5.5
포르투갈	6		2	8	10	10	4	3	2	2	2	3		8			60	65.9
스페인	3		1	3	10	10	4	1	2		3	3		1	1		42	46.2
스웨덴	3		1	1							2						7	7.7
스위스	1		1	2	1	1	1										7	7.7
터 키	6		1	3	3		3	3	1								20	22.0
영 국	3																3	3.3
미 국	3			3	2		2										10	11.0

3개 항목을 유보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보율이 높은 항목은 자본 시장에서의 증권거래 항목으로서, 덴마크, 이탈리아, 네델란드 및 영국등 4개국 만이 모든 소항목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전항목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유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 항목은 모든 회원국이 자유화하고 있으며, 직접투자의 청산 및 비거주자 봉쇄자금의 처분은 그리스 1개 회원국만이 유보하고 있다.

한편, 농업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접투자 및 직접투자의 청산과 부동산거래의 유보현황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소항목을 기준으로 유보항목의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A1 1개 소항목 즉, 외국인의 국내투자과 관련하여 완전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과 확장 및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취득에 관하여만 부분유보를 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위스를 들 수 있다. 2개의 소항목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및 이탈리아등 3개국이 있다. 반면에, 6개의 소항목 모두에 대하여 부분유보를 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갈 및 터키등 5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들도 외국인의 국내투자과 관련한 A-관련 항목들은 유보하고 있으며 B-관련 항목 즉,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자유화하고 있다. 직접투자의 청산과 관련하여서는 직접투자의 6개 소항목을 부분유보하고 있는 그리스만이 외국인의 국내투자 청산에 관한 소항목을 부분유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및 터키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건축 및 구입을 완전유보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 등이 부분유보를,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는 자유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OECD 가입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자유화 범위와 관련한 문제, 즉 유보 범위와 관련하여 신중하고도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직접투자 부문의 자유화(또는 유보)범위와 관련한 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OECD 회원국 중 일본의 자본이동자유화 경험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표 2-3 직접투자 및 그 청산과 부동산 거래의 유보 현황

	직 접 투 자						직접투자의 청산		부 동 산 거 래			
	A1	A2	A3	B1	B2	B3	A	B	A1	A2	B1	B2
오스트레일리아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캐나다	▲	▲	▲						※			
덴마크	△								△			
핀란드	▲	▲	▲	☆	☆	☆			※		☆	
프랑스	△	△	△									
독일	△	△										
그리스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탈리아	△	△										
일본	▲	▲	▲	△	△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스위스	△								△			
터키	△	△	△	△	△	△			※			
영국	△	△	△									
미국	△	△	△									

주: 1) △ 는 부분유보.

▲ 는 부분유보 내용 변경.

☆ 는 유보 철회.

※ 는 완전유보.

주: 2) 아이슬랜드, 멕시코 제외.

## 4. 일본의 경험

경제의 자유화 척도로 통상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의 자유화를 인용한다. 국제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무역의 자유화가 성숙 또는 완성되는 단계에서 자본의 자유화가 추진되는 추세이다. 한 나라의 자본자유화는 경제의 성숙여건과 자유화의 추진시기 및 추진속도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효과는 통상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투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단기자본의 유출입을 통하여 통화, 환율, 물가, 실업 및 국제수지등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국제수지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의 추진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시기와 추진속도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자본자유화의 경험을 살펴보는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의 미·일무역경제회의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적이었으며, 국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특히 IMF 8조국으로의 이행 및 OECD에의 가입등으로 대외거래 자유화의 기반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제2의 흑선 내습” 이라 하여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자본자유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외국자본에 의한 일본의 지배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OECD에 가입하면, 그리고 OECD 자유화규약, 특히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수락하면 거대한 외국 자본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기업을 흡수하거나 또는 도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는 자본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역할이라는 주장까지 대두되곤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 같이 자본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외국 자본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자본자유화”는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회사의 설립등에 관하여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투자 및 내국인의 국외투자를 포함하는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외자도입의 한 형태로서, 당시 일본에서는 1950년의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었다. 일본의 외자도입에 관한 정책은 국제수지 대책에서 원칙적으로 외자도입을 금지하였으며, 다만 국제수지의 개선이나 중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효과가 확실한 양질의 외자도입만을 예외적으로 인가하였다. 즉, 외자도입에 관한 한, 일본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외국(인)의 일본내 직접투자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외자도입의 원칙적 금지정책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1959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외자운용법이 완화되었다. 외자심의회는 1960년 일본은행에 한해서 자동인가폭을 확대하였으며, 1961년에는 기술도입에 대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인가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외자도입의 규제는 사실상 강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64년 OECD 가입시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관한 규약”과 관련하여,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18개 항목을 유보하고, 동 규약을 수락하게 됨으로써 자본자유화와 관련하여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 후 직접투자의 자유화 문제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큰 논쟁을 초래하였다. 즉,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리와 소극적인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자본자유화에 소극적인 논리는 자본자유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일본 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소극적 논리는 직접 당사자인 기업계로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시 할 수 있으나, 이와함께 정부, 특히 통산성이 소극적이었다.

이는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 통산성이 외국기업의 일본내 진출시,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의 한계, 즉 정부 개입의 한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자본 자유화를 적극 지지하는 측은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유화 한다”는 소극적 논리는 자본자유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출발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자유화에 소극적인 측은 국민경제의 이익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 소유자(또는 경영자)를 보호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들은 직접투자는 세계 전체의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후생을 높이는 데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직접 투자는 경영자원의 이동이며, 직접투자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일본 기업의 체질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투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은 임금 소득자, 금융 소득자 및 일반 주주들이라고 하였다. 즉, 임금소득자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임금도 상승하여 이익을 보게 되며, 외국자본이 일본에 유입되더라도 그들의 필요 자금 또는 운전자금은 일본내에서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금융 소득자도 이익을 보게 되며, 기업소유자의 주식 매점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 가격도 상승하게 됨으로써 일반 주식투자자(또는주주)들도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직접투자로 인하여 손해의 가능성이 있는 측은 외국 자본과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기업의 소유자(또는 경영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지지론자들도 첨단기술분야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외국자본의 연구개발투자는 본국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쟁속에서 자본 자유화는 1967.7월부터 1973.5월까지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1967년 7월부터 제1차 자본자유화가 실시되면서 1969년 3월 제2차 자유화, 1970년 9월 3차 자유화, 1971년 4월 자동차 자유화, 1971년 8월 4차 자유화, 1973년 5월 원칙적 100% 자유화로 발전하였다. 제1차 자유화시에는 직접투자의 자동인가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제2차 자유화까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에 한하여 직접투자가 허용되었다. 제3차 자유화 시에는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100% 직접투자 자유화 업종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투자의 가능성이 적은 업종들이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는 50 대 50까지의 자유화 수준이었다. 즉, 제3차 자본 자유화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정책당국의 기본 방침이 경쟁의 제한을 통하여 자본자유화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4차 자유화에서는 투자대상의 선정 방법으로 positive list가 아닌 negative list 방식이 채택됨으로써, 비로소 적극적인 자본 자유화의 단계로 접어 들었다. 그리고 1973년 5월에는 50 대 50 형태의 투자로부터 탈피하여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의거한 원칙적 100% 자유화가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 기업 설립시 농림수산업, 광업, 석유업, 피혁업 및 소매업의 5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였다. 이후 소매업이 자유화되면서, 1976년 9월 현재 개별심사 대상업종은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 광업등 4개가 예외업종이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어 온 자본자유화의 효과는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자본의 유입과 동시에 도입된 기술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수지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1960년대 중반이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통화 및 외환 관리에 있어 정책적 전환을 맞게 된다. 즉, 엔(Yen)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외국자본의 유입 및 경상수지의 흑자등에 기인한 통화팽창과 이에따른 물가불안 문제가 정책상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1971년 및 1973년 엔(Yen)화의 평가절상이 있었다. 그러나 1974년의 석유파동(Oil Crisis)을 겪으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일시 감소되었으나, 그 이후 일본 경제가 회복기를 거쳐 안정성장기로 이행하면서 다시 외국 자본의 도입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초반의 통화량증가 및 인플레이션등으로 인하여 통화금융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즉, 국채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과리 및 실질 이자율의 하락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등은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자본자유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이자율의 자유화는 국내시장에서는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켰으며, 국제적으로는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받게 되었다. 특히 1980년의 외환법 개정은 자본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바, 이는 당시의 외환법 개정으로 외환관리체계가 “원칙 금지”에서 “원칙 자유”로 전환되었고 또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투자의 활성화는 계속된 경상수지의 흑자 및 누적되는 외환보유고의 증대에 따른 Yen화의 절상 압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Yen화의 저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전환기에서 추진되었다. 즉,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Yen화의 저수준 유지가 가능하였으며, 이 결과 일본의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를 자본수지의 적자로 상쇄하였다. 즉, 일본은 자본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조치를 택함으로써, 자본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 3 장

# 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적용효과 분석

### 1. 자본이동 자유화의 개념과 의미

자본은 노동과 함께 대표적인 생산요소의 하나이므로 자본이동 자유화는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함을 의미한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환율, 통화량 및 이자율 등의 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시경제적, 혹은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는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으로 간주되어 일반균형에 대한 외생적 충격에 의해 국내 부문별 생산량과 요소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생산요소이동의 효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있어 왔다.

생산요소 이동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로는 우선 Rybczinski (1955)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 립진스키 정리

“2 요소 2 재화 모형에서 어느 한 요소의 공급만이 외생적으로 증가할

경우 두 재화 가격이 일정하다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재화의 생산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는 재화나 생산요소의 숫자가 둘 이상일 경우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간 및 부문간 이동이 제한된 생산요소가 존재할 경우 적용될 수 없다. 이와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Jones(1971)는 2재화당 1개씩 2개의 부문고정요소(specific factor)와 1개의 이동가능요소(mobile factor)로 구성되는 3요소 2재화 모형에서 각부문의 요소간 대체탄력성과 요소 분배몫(distributive share)의 개념을 이용하여 요소공급량과 요소가격간의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동가능 요소 공급량의 증가는 그 요소가격은 하락시키지만 부문고정요소들의 가격은 모두 증가시킨다.

둘째, 부문고정 요소 공급량의 증가는 재화 가격이 일정할 경우 부문고정 요소들의 가격은 모두 하락시키는 대신 이동가능 요소가격은 상승시킨다. 따라서 이동가능 요소가격과 부문고정 요소가격의 변화 방향은 언제나 반대이다.

Samuelson(1971)은 이와같은 Jones의 결과를 요소실질가격(real factor returns)으로 측정한 결과 이동가능 요소의 증가로 인한 부문고정 요소의 실질가격은 항상 상승하지는 않으며 또한 어느 한 부문고정 요소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다른 부문고정 요소의 실질가격이 증가할 수도 있어 이동가능 요소가격과 부문고정 요소가격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Caves(1971)는 Jones의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한 부문 A의 고정요소 공급량 증가에 의한 다른 부문 B의 고정요소가격은 부문 B의 이동가능 요소의 비용 비중이 더 클 경우 하락폭이 부문 A의 고정요소보다 더 커짐을 보였다.

한편 Mayer(1974)는 립친스키와 스톨퍼-새뮤엘슨에 의해 간과되었던 “즉각적인 충격(immediate impacts)”을 분석하기 위해 단기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일부 요소가 부문간 이동가능하지 못한 단기에 있어서도 Jones의 결과와 같이 이동가능 요소의 증가는 그 요소가격은 하락시키는

동시에 고정요소들의 가격은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민 규제의 자유화에 대해 노동자들은 격렬히 반대하는 반면 자본 소유자들은 찬성하는 현상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본래 2요소 2재화만이 존재하는 Heckscher-Ohlin 모형에서는 일정한 요소집약도 범위안에서 두 재화가 모두 생산될 경우 요소 부존량의 외생적 변화가 요소가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atra and Casas(1976)는 고정요소가 없는 3요소 2재화로 구성되는 일반화된 헷서-올린 모형을 이용하여 부문고정요소 모형이 일반화 모형의 특수한 경우임을 보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요소공급의 증가는 재화 가격이 일정할 경우 항상 그 요소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둘째, 노동 공급의 증가는 두 재화가 모두 토지집약적일때 자본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두 재화가 모두 자본집약적일 경우 토지 가격을 상승시킨다.

셋째, 어느 재화도 공급량이 증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두 요소의 가격은 상승하며 반대로 공급량이 증가한 요소를 어느 한 재화가 집약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두 요소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밖에 Chang(1979)은 재화와 생산요소의 수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완전고용과 경쟁적 이윤 극대화의 과정에서 요소 부존량의 변화가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렬(matrix)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행렬의 위수(rank)를 이용하여 요소의 수가 재화의 수보다 많을 경우 요소가격 균등화가설이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한편 Ruffin(1981)은 Batra and Casas(1976)가 부문고정 요소모형의 일반화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 모형은 중간요소 (middle factor)와 극단요소(extreme factor)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 정리와 같이 완전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 Ruffin의 정리

완전 경쟁적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성이 작용할 때 3요소에 의해 2재화가 생산된다면 극단요소의 공급량 증가는 중간요소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해당 요소와 다른 극단요소의 가격은 하락시키며 마찬가지로 중간요소의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극단요소의 가격은 모두 상승하는 대신 중간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

Jones and Easton(1983)도 요소 부존량의 변화가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요소집약도 및 요소대체성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요소가 3개, 생산물이 2개인 경우 Ruffin의 정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또한 Jones(1985)는 이 결과를 이용하여 Ruffin의 정리가 3요소 2생산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임의의 수인  $r$ 요소,  $n$ 생산물의 경우에도 성립함을 다음 정리와 같이 입증하였다.

### Jones의 정리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완전고용된 생산요소의 수( $r$ )가 생산물의 수( $n$ )보다 많을 경우 어떤 요소의 공급량이 변화하여 요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요소의 가격을 하락시키면 그보다 요소집약도가 낮은 요소들 중에서 어느 요소건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며 이러한 변화유형은 적어도 한번 이상 역전된다.

이와 같은 요소공급량 또는 요소이동과 요소가격간의 관계를 이용한 국가별 실증적 연구로는 Thompson and Clark(1983)이 미국에 있어서 생산요소 이동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요소혼합항(factor mix term)과

---

1) Ruffin은 3요소와 2재화가 존재할 경우 부문간 요소이용도 또는 요소집약도가 가장 크거나 작은 두 요소는 극단요소, 그리고 극단요소가 아닌 나머지 요소를 중간요소라 정의하였으며 이는 Jones와 다른 학자들의 요소집약도 순위(factor intensity ordering)와 유사한 개념임.

대체항(substitution term)으로 나누어 극단요소관계에 의해 추정된 것이 있으며 또한 Clark and Thompson(1986)이 캐나다로의 이민과 자본 이동이 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노동을 숙련 및 비숙련과 각 산업 업종별 노동으로 분류하여 6개의 생산요소와 5개의 생산물로 이루어진 모형을 만들고 상대적 요소이동 탄력성(relative factor movement elasticity)을 도출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할 때 숙련 전문직 노동의 가격은 떨어지고 다른 종류의 노동 가격은 상승함을 보였다.

또한 Dixit and Norman(1980)은 쌍대성(duality)에 입각하여 GNP 함수를 도출하고 몇 가지 특성을 유도하였다. Dalal(1985)은 이 GNP 함수의 동차성으로부터 이 함수의 두가지 특성을 추가적으로 밝혀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일반균형모형에서 생산요소의 이동이 요소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내의 연구는 요소 이동의 이론적인 효과에 관한 것보다는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초래할 영향과 그에 대응한 화폐금융정책 및 외환관리방안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부문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손일대(1989), 김영린(1993), 손정식 외(1993) 및 김인준(1993), 최장봉(1994)이 자본자유화가 환율, 통화량 및 금리와 물가등에 미치는 영향과 거시경제정책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김남두(1991)는 한미간 직접투자의 효율화에 관해 그리고 최인범 외(1991)은 제조업에 있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하였다. 표학길과 권호영(1993)은 3요소 2교역재 모형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자본자유화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권호영(1994)은 상기 모형을 이론적으로 검정하였다.

## 2. 자본자유화의 효과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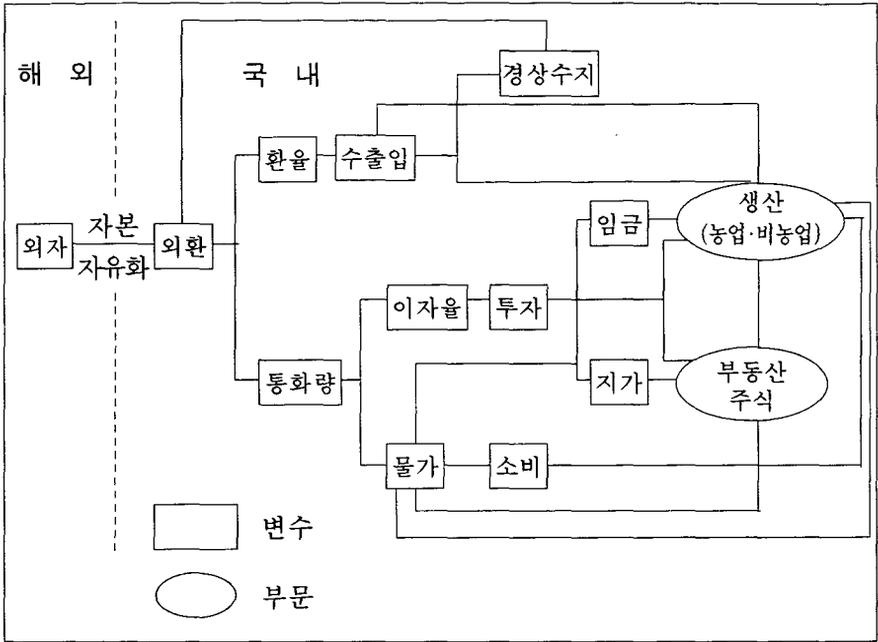
### 2.1. 분석모형의 대상과 범위

자본자유화의 결과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과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외자의 국내 유입은 다시 직접투자과 간접투자로 분류될 수 있다. 자본이동의 방향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과 법규와 제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자본 이동이 자유화 된 이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의 수익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로 인한 수익성이 높기만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림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외환 잔고의 증대를 통해 환율이 하락(원화의 평가절상)하면서 동시에 통화공급의 증대를 초래한다. 통화량의 증대는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이자율을 하락시켜 다른 여건이 일정한 경우에도 투자 마인드가 증가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곧 임금과 지가 등 생산요소를 포함한 물가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한편 국내 생산능력 이상의 경기활성화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를 증대시켜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이 증대된다. 이는 환율의 하락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임금과 지가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은 요소 소유자들의 부(富)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농업 및 비농업의 생산비를 상승시켜서 실물 경제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은 물론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하도 부진하게 되어 생산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국내외 금리 등 자본의 수익성 차이로 인해 유입된 외국 자본은 농업과 같이 생산성이 낮거나 제조업과 같이 높은 생산비로 인해 영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생산적 투자를 기피하고 수익성이 높은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이나 골동품, 토지 및 향락적 서비스 부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국가 경제 전체의 건전한

그림 3-1 해외자본 유입의 흐름도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전국이 투기장화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물론 국내 여건이 건전하게 정비되어 상업차관, 현지금융 및 해외기채 등 해외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될 수 있다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이 향상되므로 각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흔히 자본과 같이 도입되는 새로운 생산기술이나 경영기법의 영향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자유화에 앞서 국내 금리의 자유화, 투기 예방을 위한 조세제도와 법규의 완비, 국내 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등 제반 국내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 자본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거쳐 임금 및 지가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농업생산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2. 분석 모형의 기본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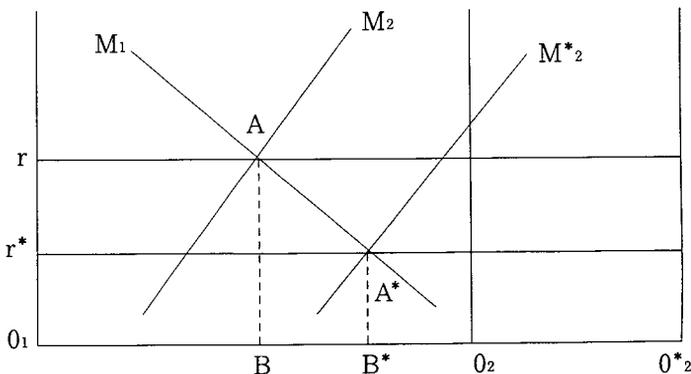
자본이동자유화가 국내 각 부문별 생산량과 생산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본, 노동, 토지의 3개 요소와 농업 및 비농업의 2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좁은 면적의 국토에서는 토지라는 생산요소가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며 요소이동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하여 비농업이라는 단일 부문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형의 기본가정은 우선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로서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이며 생산요소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요소의 부문간 자유로운 이동으로 완전고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과 비농업의 두 부문은 각기 서로 다른 선형동차 생산함수에 의해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각각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

## 2.3.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

먼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각 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요소의 외생적 증가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2).

그림 3-2 생산요소 증가와 생산량



(그림 3-2)에서 M1, M2는 각각 농업과 비농업 생산물의 한계수입 생산곡선이며  $O_1O_2$ 는 자본자유화 이전의 자본공급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자율  $r$ 에서 농업부문에  $O_1B$ , 비농업부문에  $O_2B$ 의 자본이 투자되어 점A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O_2O_2^*$  만큼의 외국자본이 유입될 경우 비농업부문에 투자된 자본의 한계수입 생산곡선도 M2에서  $M^*2$ 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점은 점  $A^*$ 가 되며 따라서 농업부문의 투자는  $O_1B^*$ 로 증가하지만 증가폭이 자본유입량  $O_2O_2^*$ 보다 작기 때문에 비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도  $O_2B^*$ 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농업과 비농업부문 모두 생산이 증가하고 균형이자율은  $r$ 에서  $r^*$ 로 낮아질 것이다.

## 2.4.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

자본자유화가 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Ruffin(1981)이 일반화시킨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지금  $w_i$ 를  $i$ 요소의 가격,  $p_j$ 는  $j$ 財의 가격,  $V_i$ 는  $i$ 요소의 공급량, 그리고  $X_j$ 는  $j$ 財 생산량이라 할 때, 요소투입계수  $a_{ij}$ 는  $j$ 재 1단위 생산에 필요한  $i$ 요소의 최소투입량으로서 1차동차 생산함수하에서  $a_{ij}$ 는 생산수준에 관계없이 요소가격( $w_i$ )만의 함수이므로

$$a_{ij} = a_{ij}(w_1, w_2, w_3), \quad i = 1, 2, 3, \quad j = 1, 2$$

두 財가 모두 생산된다면 (Nonspecialization), 완전경쟁 시장조건에 의해 최소생산비와 가격이 일치하므로

$$\sum_{i=1}^3 w_i a_{ij}(w) = P_j, \quad j = 1, 2$$

또한 요소시장의 완전고용조건에 의해

$$\sum_{j=1}^2 a_{ij}(w) x_j = V_i, \quad i = 1, 2, 3$$

따라서 11개의 방정식과 11개의 내생변수( $a_{ij}$ ,  $w_i$ ,  $x_j$ ) 그리고 5개의

외생변수( $V_i, p_j$ )로 이루어진 일반균형모형이 된다.

Diewart and Woodland(1977)는 요소수요곡선이 우하향

$$\left[ \frac{\partial a_{ij}}{\partial w_i} \leq 0 \right] \text{ 임을 증명하였고}$$

Samuelson(1953-4)의 reciprocity condition은

$$\frac{\partial w_i}{\partial V_j} = -\frac{\partial w_j}{\partial V_i} \text{ 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Jones and Scheinkman(1977)에 의해

$$\sum_i V_i dw_i = \sum_j X_j dp_j \text{ 이므로}$$

$$\frac{\sum_i V_i \partial w_i}{\partial V_h} = 0, \text{ 단 } i \neq h$$

그런데 정상적 조건에서  $\frac{\partial w_h}{\partial V_h} < 0$  이므로

$\frac{\partial w_h}{\partial V_g} > 0$  인 요소  $V_g$ 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3요소 2재의 경우 요소투입계수의 비율은 항상

$$\frac{a_{11}}{a_{12}} > \frac{a_{21}}{a_{22}} > \frac{a_{31}}{a_{32}}$$

와 같이 배열될 수 있으므로 부문2에 대한 부문1의 상대적 요소투입계수 비율에 따라 두개의 극단요소(extreme factor: 요소 1과 요소 3)와 하나의 중간요소(middle factor: 요소 2)로 분류되어 “극단요소(요소 1 또는 3)의 외생적 증가는 중간요소(요소 2)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다른 극단요소(요소 3 또는 1)의 가격은 하락시킨다”는 “Ruffin의 정리”가 성립된다.

## 2.5. 실증적 적용 결과

자본이동자유화가 국내 생산요소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우리 나라 경제에서 극단요소의 하나인가 또는 중간요소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 비농업과 농업부문간 요소투입계수의 비율을 계측한 결과가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표 3-1)에 의하면 우리 나라 농업부문의 상대적 자본투입계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 노동투입계수보다 낮았으나 비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 결과 1980년대 이후부터 역전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상대적 투입계수보다는 낮아서 자본이 '중간요소', 노동과 토지는 '극단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농업부문에 대한 농업부문의 상대적 자본투입계수가 노동의 그것을 초과하는 한 향후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자본이 증가할 경우 이자율은 하락하는 반면 노동과 토지의 가격, 즉 임금과 지가의 상승이 초래될 전망이다(그림3.3 참조). 이는 곧 '자본자유화의 흐름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자 유입이 농지 및 비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어 물가를

표 3-1 농업부문의 상대적 요소투입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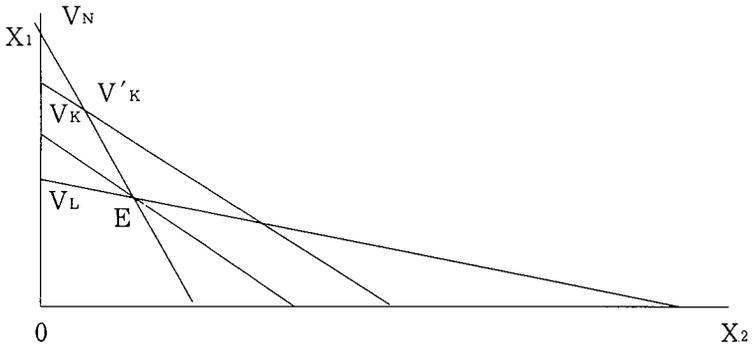
연 도	자 본	노 동	토 지	중간요소
1970	0.203	0.264	n.a.	
1975	0.205	0.223	n.a.	
1980	0.295	0.293	2.98	자본
1985	0.406	0.280	2.85	자본
1988	0.387	0.269	3.33	자본

주: 자본투입계수는 국민계정의 부문별 고정자본소모분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구했으며 노동투입계수는 피용자보수를 이용하였음. 농업의 토지투입계수는 토지생산성의 역수에 지목별 지방세 과표를 적용, 환산하였으며 비농업 부문의 계수는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면적에 지목 별 지방세 과표를 적용하여 산출했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지표, 각 연도, 내무부, 지적통계,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 생산요소 증가와 요소가격



## 제 4 장

# 우리 나라의 자본자유화계획 및 관련 제도

### 1. 자본자유화 현황

1962년 이래 1994년 7월까지 외국인 투자 실적 누계는 120억 달러로서 그 중 광업 및 제조업이 전체의 63.6%에 해당하는 76억 3천여만 달러, 서비스업이 36.2%인 43억 5천만 달러, 그리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 외국인 투자의 0.2%인 2,43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표 4-1).

이를 기간별로 보면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된 1971년까지의 기간에는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체 2억 6천 6백만 달러의 87.1%인 2억 3천2백만여 달러로서 절대액으로나 상대적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12.1%인 3천 3백만 달러, 그리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2백만 달러가 조금 넘는 0.8%에 불과하였다.

경제개발 초기의 외자 도입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된 이같은 순위는 제3차 및 제4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중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외국인 투자의 절대액이 1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산업별 투자액의 순위는 여전히

표 4-1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기 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 계
1962~71	2,096(0.8)	231,753(87.1)	32,821(12.1)	266,031(100)
1972~81	12,712(0.8)	1,164,302(72.7)	423,060(26.5)	1,600,074(100)
1982~86	2,611(0.2)	935,187(52.9)	829,931(46.9)	1,767,729(100)
1987~88	5,788(0.3)	1,519,230(64.7)	822,066(35.0)	2,347,084(100)
1989	158(0.0)	730,750(67.0)	359,371(33.0)	1,090,279(100)
1990	-	583,942(72.8)	218,693(27.2)	802,635(100)
1991	-	1,070,358(76.7)	325,638(23.3)	1,395,996(100)
1992	809(0.1)	649,400(72.6)	244,267(27.3)	894,476(100)
1993	127(0.0)	526,817(50.5)	517,330(49.5)	1,044,274(100)
1974.1~7	-	214,532(27.2)	573,947(72.8)	788,479(100)
누 계	24,401(0.2)	7,626,271(63.6)	4,346,485(36.2)	11,997,057(100)

주: 신규 및 증액 인가(신고)금액임.

자료: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1994.7~8.

광공업, 서비스업 그리고 농림수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 투자액의 상대적 비중은 광공업의 비중이 72.7%로 낮아진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26.5%로 대폭 증가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1천 3백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은 0.8%에서 거의 일정하다는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에 진입한 제5차 경제개발계획 기간(1982-1986)중의 외국인 투자 총액은 17억 7천만여 달러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9억 3천 5백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8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각각 총 투자액의 52.9%와 46.9%를 차지하였다. 농림수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백 60만 달러로 감소하여 그 비중이 0.2%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농업보다는 제조업이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일반적 추세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 기간중에는 부분적인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 총액이 56억 3천 5백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부문별로도 광공업이 39억 4백만 달러, 서비스업이 17억 2천 6백만 달러, 그리고 농업부문도 6백만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비중은 광공업이 69.3%로 1980년대 초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은 각각 30.6%와 0.1%로 감소하였다. 이는 지속되는 농업부문 외국인 투자 규제와 아울러 광공업에 대한 부분적인 투자 허용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1994년 7월까지의 최근 2년반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적인 외국인 투자 허용과 더불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액 27억 2천 7백만 달러의 49.0%로 증가한 반면 광공업에 대한 투자는 51.0%로 감소하였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1백만 달러 미만으로 0.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까지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 농업부문이 양봉, 양잠, 그리고 말, 양사육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축산업, 육묘를 제외한 원예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농약도매업과 채소소매업 등 비교적 투자 수익성의 전망이 밝지 않은 항목들 임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첫째, 해당 부문의 현재 및 미래의 투자수익성과 둘째 정부의 투자 자유화 조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투자 자유화 조치는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을 해제하는 좁은 의미로서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법규를 모두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 개편하는 넓은 의미의 자유화를 포함한다.

## 2. 농업부문 외국인 투자자유화계획

외국인 투자자유화계획에 따라 정부가 1993. 6월 발표한 1997년까지의

자유화계획중 농업부문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이와같은 외국인 투자자유화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그 예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용된 선정 기준은 첫째, 외국인 투자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둘째, 외국인 투자가 있더라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업종, 셋째, 외국인 투자가 국내 농업발전에 기여 가능한 업종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까지 외국인 투자가 유보된 업종은 농업생산업종에서는 보통작물 생산업, 육우 사육업, 양잠업중 잠종 부문, 유통 분야에서는 곡물의 도·소매업 및 도정업, 고기 도매업등 4개업종,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분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계획은 1994.6월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개방의 폭이 확대 및 조기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부문을 살펴보면, 양잠업이 자유화 유보 대상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화 유보업종은 7개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또한 자유화 대상업종이던 곡물소매업이 부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그리고, 1994년 까지의 기개방 업종을 제외하고 1995~97년 기간중 외국인 투자자유화 대상업종의 일정이 일부 앞당겨졌다. 즉, 1993년에 발표되었던 자유화 계획에 의하면, 1997년에 개방하기로 되어 있던 종묘생산업이 화훼부분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투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종묘생산업의 개방이 앞당겨지게 되었다.

한편 1993년의 자유화계획에 의하여 1997년에 개방하기로 하였던 도축업, 가금 도살업, 비료 도매업, 고기 소매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1996년으로 앞당겨졌으며, 곡물 소매업이 상품연쇄점에 한하여 1996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1994년 7.1일 기준 외국인 투자 자유화 일정은 (표 4-3)과 같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곧 투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할 뿐, 현재 및 미래의 투자수익성이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내 규제를 해제해도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기대할 수 없다.

표 4-2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

자유화연도	투자 자유화 대상 업종	업종수
1993	① 양봉업 ② 양잠업(잠종부문제외)	2(1)
1994	① 말뚝 양사육업 ② 기타축산업 ③ 원예관련서비스업(육묘부분제외) ④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 ⑤ 농약도매업 ⑥ 채소소매업	6(1)
1995	① 과일생산업 ② 종자도매업 ③ 과일 및 채소도매업 ④ 과일소매업 ⑤ 수의업	5(1)
1996	① 화훼작물생산업 ② 향신작물생산업 ③ 기타기금사육업 ④ 과일소매업 ⑤ 수의업	4
1997	① 기타작물생산업 ② 채소작물생산업 ③ 종묘생산업 ④ 멜론 및 기타초본성 과일생산업 ⑤ 시설작물생산업 ⑥ 낙농업 ⑦ 양돈업 ⑧ 양계업 ⑨ 복합농업(축산+작물생산) ⑩ 원예관련서비스업(육묘부분) ⑪ 도축업 ⑫ 가금도산업 ⑬ 비료도매업 ⑭ 고기소매업	14
자유화유보	① 보통작물생산업 ② 육우사육업 ③ 양잠업(잠종부문) ④ 곡물도매업 ⑤ 고기도매업 ⑥ 곡물소매업 ⑦ 곡물도정업 ⑧ 전분제조업	8
합 계		39(3)

주: 외국인 투자 자유화대상 검토업종은 36개이나, 윗표에서 합계가 39개인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양잠업, 원예관련서비스업이 2중계산되었고, 곡물 및 종자도매업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농림수산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자유화 계획의 배경과 대상업종 선정의 기준은 전세계적 국제화 조류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자유화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투자할 만큼 수익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국내 경제에서의 중요성이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서 거의 포기하다시피한 업종과 국내 업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자유화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어도 당장 외자가 농업부문에 대량으로 유입된다고 보기는

표 4-3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 자유화 현황 및 계획

시 기	업 종	비고
93. 7. 1	양봉업, 양잠업	
94. 1. 1	말, 양 사육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축산업, 원예관련 서비스업(육묘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 농약도매업, 채소소매업	
95. 1. 1	종묘생산업(화훼분야), 과일생산업, 종자도매업, 과일 및 채소도매업, 과일소매업, 수의업	
96. 1. 1	화훼작물생산업, 음료 및 향산작물생산업, 기타 가금 사육업, 도축업, 가금도살업, 비료도매업, 종묘생산업(완전개방), 고기소매업, 곡물(상품연쇄화점), 곡물제분업(합작의무조건)	
97. 1. 1	기타 작물생산업, 채고작물생산업, 메론 및 기타 초본성 과일생산업, 시설작물 생산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복합영농, 원예서비스업	
유보	(1) 보통작물 생산업 (2) 육우사육업 (3) 곡물도매업 (4) 고기도매업 (5) 곡물소매업(상품연쇄화점 이외) (6) 곡물도정업 (7)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주: 이 자료는 1994. 6. 10 재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해 1994. 7. 1부터 시행하는 계획으로써 종전의 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일부 조기 또는 신규개방하는 것임.

자료: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1994. 7-8.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외자의 유입 여부 및 유입 규모는 국가 전체의 금융시장 개방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유입된 외자는 각 부문별 수익성에 따라 국내 산업으로 투자될 것이므로 국가 전체로서 자본 수지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 외자 유입 전망과 거시경제적 대응방안

(표 4-3)과 같이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광공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규제도 점차 완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본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비롯한 장단기 자본유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외환제도개혁소위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 우리 나라의 자본수지는 147억 달러의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액과 88억 달러의 해외 증권투자를 제외하고도 78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포함, 1,709억 달러의 장기 자본과 555억 달러의 단기 자본 등 2,260억 달러 이상의 외자가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4-4).

농업부문에 농산물 도소매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물론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 농업관련산업과 작물생산, 축산 등 농업생산부문 그리고 농지 등 생산요소시장에도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산업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장기 또는 단기의 투기성 자금으로 변할

표 4-4 연도별 자본수지 전망

단위: 억 달러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누 계
<장기자본수지>	95	136	247	287	457	487	1,709
증시자금	47	58	61	65	122	110	463
채권시장	0.5	2	63	72	146	167	450.5
외화증권	28	30	60	71	85	94	338
SOC 차입	7	9	11	13	15	17	72
연불수출	10	10	5	5	5	5	40
공공차관	4	4	3	2	-	-	13
상업차관	0	20	30	40	60	70	220
해외직접투자	-18	-21	-24	-26	-28	-30	-147
해외증권투자	-11	-10	-13	-16	-18	-20	-88
외국인직접투자	8	10	12	14	16	18	78
<단기자본수지>	21	69	172	178	70	45	555
합 계	116	205	419	465	527	532	2,264

자료: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외환제도개혁소위, 중아일보 1994년 10월 12일자에서 인용.

수 있는 463억 달러의 증시자금과 450억 달러의 채권시장 자금, 그리고 외화증권의 370억 달러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유입될 78억 달러 등 1300억 달러(1994년 12월 기준 104조원)가 높은 수익성을 찾아 국내에 유입될 경우 1994년 연초의 통화(M1) 28조원의 4배 가까이 되며 총통화량 (M2) 110조원과 거의 맞먹는 통화량 증대로 인하여 물가 상승은 물론 농지를 포함한 투기성 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생산기반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외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한도 확대 등으로 인해 유입되는 자본은 투기적 동기에 의한 자본이므로 주가, 부동산 가격 등을 자극하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자본자유화는 가급적 그 폭과 속도를 낮추거나 가변예치의무제(variable deposit requirement: VDR)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금리차이를 없애는 대신 장기 상업차관과 연불수출, 그리고 SOC 차입 등 국민 경제의 생산적 측면에 도움이 되는 자본 유입은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그 규모도 과감하게 확대하거나 규제를 완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유입되는 외자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증권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자본거래와 기술도입에 따른 로얄티 지급, 수출입 수수료 지급, 해외 사무소 설치를 위한 비용 지출, 해외이주비용 한도확대 및 해외송금 등 경상거래의 자유화를 촉진하여 자본의 해외 유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개인 및 법인 재산의 과도한 해외 반출 또는 도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같이 외화 유입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건설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개발연대에 통용되던 금융

재정정책에 더 이상 의존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자본)의 확보가 가장 절박한 문제였던 과거에는 물가상승에 의한 국민후생의 감소를 무릅쓰고 통화를 증발하고 외자도입을 정부가 적극 유도하며 외환관리의 집중화를 통해 외화의 유출을 방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국내 물가는 국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국내 통화관리 및 재정정책에 관계없이 해외부문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국내외 변수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뿐 아니라 이자율, 수출입, 국제수지 등 거의 모든 경제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해외부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국내부문만을 고려한 정책은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금융재정정책은 무엇보다도 금융의 자율화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국내부문에서 여수신 금리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자금의 조달과 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자율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해외부문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으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중앙은행이 독립적, 자율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통화증가 효과를 중화(sterilization)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량 증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채를 발행하여 증가한 유동성을 국내에서 환수하는 방법과 중앙은행과 외국환 은행간 또는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간의 스왑(swap)제도에 의해 해외부문의 통화를 해외에서 흡수하여 외환보유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건 통화정책만으로는 그에 따른 추가적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을 재정정책과 결합한 정책혼합(policy mix)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화채를 발행할 경우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금리가 상승하여 또 다른 외자 유입의 유인이 되고 스왑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내의 금리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은행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환 은행이나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가 곤란해진다.<sup>2)</sup> 또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입 외화를 매입하는 외환정책을 쓸 경우 통화량 증가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화와 합리적 운용을 통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정책혼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종 금리와 여신 등 금융정책 수단과 함께 예산이나 조세 등과 같은 재정정책 수단들이 종합적, 체계적, 보완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화량과 금리정책이 예산운용이나 과세율 등을 결정하는 재정정책 수단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운용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이 곤란함은 물론 재정의 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4. 자본자유화 관련 제도 및 법규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관련하여 살펴 본 우리 나라의 자유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OECD 가입시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의 준수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이 정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자유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OECD 자유화규약의 원칙중의 하나인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의 경제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 협정문 제2조는 자유화 의무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그 중의 하나가 OECD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경제여건에 따라 유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제7조는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금융상태에 따라 자유화 조치의 이행 면제 및 자유화 조치의

---

2) 최장봉(1994)은 국내 유동성의 측면에서 통화채보다 불리한 스왑제도의 단점으로 인해 스왑의 강제배정이나 국내외 금리차 이상의 차액 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철회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화 조치라 함은 자본이동에 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협정문 제1조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상의 내용에 관하여 유보 및 적용면제 등이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자유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해외자본의 유입에 따른 통화 및 물가관리상의 어려움과 함께 환율 절상 압력 및 이에따른 수입의 증가와 수출의 감소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정정책, 통화 및 외환정책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1994년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의 경우 1989~91년 기간중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재정긴축과 함께 통화관리를 강력하게 시행한 결과 통화증발 없이 물가안정 및 금리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OECD 가입을 전후한 시기의 정책변화와 경제여건 등을 검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권 진입 및 국민 경제의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자본자유화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과 “금융시장개방 3단계 계획”등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자본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환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외국환관리법을 5년이내에 폐지하는 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볼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분야는 직접투자 부문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의 농업부문 직접투자과 관련한 법규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투자된다는 측면에서 외자도입법을 들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영위하는

공익사업,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에 해를 끼치는 사업,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에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곡물작물 생산업과 농어민의 생업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사업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한과 함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재무부고시 제1994-17호)은 외자도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은 별표2에 계기된 업종중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업부문중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업 및 고기도매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예 관련서비스업(육묘를 제외하고는 허용)과 곡물 및 종자 도매업(곡물을 제외하고는 허용)은 부분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제6조(합작의무업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합작투자하거나 기존의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허용한다는 조항으로서 농업부문중 여기에 속한 업종은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등이 있다. 제7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 관한 사항이나, 농업부문 관련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8조(소매업종 및 무역업종에 대한 투자의 제한)에서는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곡물 및 고기, 과일 및 채소, 비료 및 농약 등을 수입하기 위한 무역업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진출시에도 일정량의 토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토지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따라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제한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외국자본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법률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 법 제6조(취득허가등) 제1항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5조는 허가제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군사관련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등과 관련되며, 농업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에서 농업이외의 관련 법률로서 외자자본의 국내농업분야 진출시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에 의거하여 볼 때, 외국인 투자의 허용 또는 유보는 우선 외자도입법에 따르게 되며, 그 사업업종이 허용되더라도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종은 상기 2개의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관련법률중 관계 법률과 관련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농작물종자법 제3조(우량종자의 생산): 종묘생산업

“우량종자의 생산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행하며 농림수산부장관은 우량종자의 생산을 농촌진흥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단체 또는 농가에 대행시킬 수 있다.”

#### 주요농작물종자법 제8조(판매허가): 종자도매업

“종자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제3조에 의한 농업단체와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종묘상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묘관리법 제3조(종묘업의 허가등): 버섯생산업**

주요 내용은 종묘업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종묘상의 경우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함.

**잡업법 제4조(잡종생산업의 허가등): 잡종생산업**

“원원잡종, 원잡종 및 보통잡종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할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임대할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18조(양곡매매업의 신고): 곡물도매업, 곡물소매업**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중개업의 구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도정업**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축산법 제13조의 2(축산업의 허가등록(시·도지사)): 양돈업, 양계업**

동 시행규칙 제20조의 2(허가규모, 등록절차등): 양돈업, 양계업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4조(작업장의 설치허가): 도축업, 가금도살업**

“작업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설치허가와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안법 제32조(도매시장 개설 허가(시·도지사)): 고기도매업**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 고기 소매업(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료관리법 제13조(비료판매업의 등록): 비료 도매업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10조(농약판매업의 등록): 농약도매업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 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17조(개설): 수의업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

주요 내용: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취업이 가능하며 농업노동자는 체류자격 없음.

이상이 농업분야에 외국자본 진출시 관련된 법규 및 관련 조항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볼 때 주로 허가 및 등록과 함께 이에 따른 시설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는 외국자본의 유입과는 관계없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국 자본이 유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외국 자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간의 경제제도 및 관습등의 차이로 인하여 외국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기까지 절차상의 어려움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외국자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서도 일부 불만이 표출되어 왔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규제 완화작업이 농업부문만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제 완화작업을 자본자유화와 연계시켜 볼 때 외국 자본에게는 그 만큼 국내 진출이 용이하여졌음을 의미하며 또한 일종의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즉 각종 행정규제하에서 국내인도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에 외국자본이 국내인과 동일선상에서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본이동자유화가 갖고 있는 목적을 살펴 본다면, 국가간의 자본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의 개선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자본이동자유화 특히, 자본유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산업 및 국익 보호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농업부문의 자본자유화의 규제도 우리 농업의 보호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 경제가 개방화 되어가는 추세속에서 언제까지나 농업부문에의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외자본의 유입이 농업생산기술의 발전 또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대농민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본의 유입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시점에 있으면서 국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의 유입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국내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들의 공동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 5 장

#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

### 1. 농업부문 투자수익률 비교 및 투자 전망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중 농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은 내국인의 해외투자과 외국인의 국내투자과 양분되는 직접투자 및 그러한 직접투자에 수반되는 자본거래의 청산,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와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거래 등 3개 대항목하의 12개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외에도 증권거래, 단기금융시장 거래, 공동투자 증권외의 거래,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예금계정거래 등 금융시장 분야의 자유화는 통화량, 이자율, 물가, 부동산 가격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는 농촌 물가, 농촌 임금 및 농지 가격 등 농업부문의 각종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실상 농업 부문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변화는 농협, 수협, 축협 등의 금융 및 신용사업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 파급효과 또는 영향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본연구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만을 대상으로 주요 업종들에 대해 업계의 현황, 투자 가능성과 예상되는 효과 등을 검토하는데 국한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이 농업생산의 증대 및 유통구조의 개선과 이를 통한 농가소득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OECD 자유화규약을 검토하여 볼 때 주요 관심 대상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중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부문으로 좁혀서 검토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농업관련 대외정책 또는 무역정책이 농산물의 수출입과 관련이 있었다면 자본이동자유화규약중 직접투자 부문은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국내 농업생산은 물론 가공과 유통과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생산농민의 직접적 일방적 피해라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영향과는 달리 농업 관련 부문에 있어서 고용의 창출 또는 노동력에 대한 경합적 수요 증대 및 국내 생산자들의 새로운 기술 습득과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 영세농가의 도산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농산물 시장 개방화 정책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국내농업의 생산 기반이 위축되어 가면서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 있었다면 농업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말 그대로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농업생산 및 유통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영세소농 형태의 농업생산구조 및 현대화되지 못한 유통실태 그리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각종 행정규제가 많은 상황하에서 과연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농업생산 및 유통분야에 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은 투자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수익성은

낮을지라도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미래의 예상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자본의 유입은 현재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익성과도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한국농업의 자본수익률이 낮다하여 외국자본이 농업부문에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 고도의 첨단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생산품의 품질과 기술이 낙후된 분야는 투자를 통한 시장 참여의 매력있는 분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조건, 즉 기술과 인적 자본 등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투자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소하고 투자수익률도 감소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표 5-1)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1962년 이래 투자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일본의 농업부문 전체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볼 때 한국보다 더 많은 농업투자가 행해진 일본의 투자수익률은 1965년 0.63, 1975년 0.78에서 1991년 0.37로 감소하는 추세의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중 1.24에서 0.81로, 다시 0.70으로 감소하여 일본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농업부문 전체의 투자수익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및 덴마크 등 농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투입자본의 요소비중이 큰 이른바 선진 농업국가들의 경우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술수준하에서 요소투입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 될 경우 일본을 위시한 다른 국가의 자본이 농업부문에 투자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부동산 거래 및 취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업생산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는 달리 토지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즉 농업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의 구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토지 가격의 상승률이 일반 물가나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의 가격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표 5-1 한일간 농업부문 투자수익률 비교

연 도	한 국 (A)	일 본 (B)	(A/B)	비 고
1965	1.24	0.63	1.97	
1970	0.84	0.45	1.87	
1975	0.81	0.78	1.04	
1980	0.84	0.41	2.05	
1981	0.88	0.40	2.20	
1982	0.91	0.38	2.24	
1983	0.68	0.38	1.79	
1984	0.67	0.40	1.68	
1985	0.69	0.38	1.82	
1986	0.69	0.35	1.97	
1987	0.70	0.34	2.06	
1988	0.69	0.34	2.03	
1989	0.72	0.37	1.95	
1990	0.70	0.38	1.84	
1991	0.70	0.37	1.89	
1992	0.63	-		

주: 투자수익률 = 농업순생산액 / 농업고정자본액.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3.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1993.

투자수익성이 높아지게 되어 외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농지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표 5-2)와 같이 1982~93년 기간중 우리 나라의 논값과 밭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와 17.6%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경우 0.9%와 0.5%를 나타냈다. 즉 일본의 경우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농지 가격, 특히 밭 가격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지 구입에 따른 자산 이득이 일본의 자산이득보다 높아서 외국의 투기성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OECD에의 가입이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함에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현재 국내농업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관행도

표 5-2 한일간 농지가격 비교

	한 국		일 본	
	논값(원/단보)	밭값(원/단보)	논값(엔/단보)	밭값(엔/단보)
1982	1,573,908	1,021,543	1,066,039	630,945
1985	2,366,155	1,597,200	1,162,208	674,192
1990	5,539,380	4,894,753	1,172,912	672,595
1993	5,327,933	5,127,375	1,177,410	665,261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선진국 수준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농업 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도 국민경제의 선진화 노력과 함께 일부 조정되어 갈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행정규제 완화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즉, 경제운용의 형태가 국가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정부주도형 성장전략 으로부터 시장기능의 활성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 및 농촌 부문에 존재하고 있던 행정규제도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대농민 봉사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같은 규제완화 시책도 외국자본에게는 투자의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 2. 자유화 유보업종과 외국인 투자의 영향

### 2.1.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

자본자유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유화 대상업종에 어떠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른 농업부문의 업종중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으로는 36개가 검토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보통작물 생산업
- (2) 기타작물 생산업
- (3) 채소작물 생산업
- (4) 화훼작물 생산업
- (5) 종묘 생산업
- (6) 멜론 및 기타 초본성 과실 생산업
- (7) 과실 생산업
- (8) 음료 및 향신작물 생산업
- (9) 시설작물 생산업
- (10) 낙농업
- (11) 육우사육업
- (12) 말 및 양 사육업
- (13) 양돈업
- (14) 양계업
- (15) 기타 가금 사육업
- (16) 양봉업
- (17) 양잠업
- (18) 기타 축산업
- (19) 복합농업(축산+작물생산)
- (20) 원예관련 서비스업
- (21)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
- (22) 도축업
- (23) 가금도살업
- (24) 곡물 및 종자 도매업
- (25) 과실 및 채소 도매업
- (26) 고기 도매업
- (27) 비료 도매업
- (28) 농약 도매업

- (29) 곡물 소매업
- (30) 고기 소매업
- (31) 채소 소매업
- (32) 과일 소매업
- (33) 곡물 도정업
- (34) 곡물 제조업
- (35)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36) 수의업

상기 업종을 살펴볼 때 농업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종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었으며, 이는 각 업종의 내역을 살펴볼 때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대분류 단계에서 농업, 수렵업 및 임업은 A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다시 중분류 단계에서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은 01로,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은 02로 분류된다. 제조업은 대분류 단계에서 D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23가지로 중분류된다. 그 중 농업과 관련된 음식료품 제조업은 15로, 담배 제조업은 16으로 분류된다. 음식료품 제조업중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은 151로, 낙농품 제조업은 152,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은 153, 기타식품 제조업은 154, 음료 제조업은 155로 세분된다. 중분류 24중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에서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2412로,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은 2421로 구분되어 있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대분류 G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50, 51, 52로 중분류된다. 중분류 51인 도매 및 상품 중개업중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은 512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다시 산업용 농축산물 도매업(5121)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5122)로 세분된다. 기타 도매업으로 구분된 519에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무역업이 포함되어 있다. 중분류 52는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으로서 522는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과 관련된다.

이상이 표준산업 분류상 농업과 관련된 주요 구분내역이다. KSIC 5단위

숫자에 의거하여 이들 업종의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작물 생산업(Growing of cereal grains)(01111)은 노지에서 일년생 또는 다년생의 낱알 곡물 작물과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한 뿌리작물 및 사료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곡물작물, 사료작물, 뿌리작물, 메슬린, 옥수수, 벼, 보리, 맥주맥, 호밀, 귀리, 수수, 조, 밀, 메밀, 감자, 콩, 녹두, 목초재배등이 포함되어 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 생산업(Growing of other crops n.e.c.)(01119)은 약용작물, 섬유작물, 유지작물, 공업용 원료작물의 재배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약용작물 재배, 섬유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공업용 원료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조물재료 작물 재배, 충전재료용 작물 재배등이 포함되어 있다.

채소작물 생산업(Growing of vegetables)(01121)은 노지,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내의 토양에서 잎 및 줄기채소, 열매채소, 뿌리채소등 각종 채소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지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보통작물, 공예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채소작물, 파, 양배추, 배추, 상치, 당근, 양파, 쪽파, 마늘, 부추, 치커리, 순무, 무우, 오이, 풋고추, 시금치, 고추냉이, 오이류, 고추류, 구상의 양영경귀, 아스파라거스, 가지등의 재배가 포함되어 있다. 화훼작물 생산업(Growing of Horticultural specialties)(01122)은 화초, 잔디, 관상수등과 같은 장식, 관상 및 조원용 꽃, 풀, 수목등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화훼작물 재배, 관상수 재배, 잔디 재배, 화초 재배, 정원수 재배등을 포함한다. 종묘 생산업(Growing of nursery products)(01123)은 각종 농작물의 종자, 묘목 및 육묘, 버섯 종균등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작물을 생산하면서 그 작물의 종묘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하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업종에는 화초종자, 과수종자, 채소종자, 버섯의 종균, 화초종근, 배양종자, 화훼작물의 묘목, 과수 묘목, 산림용을 제외한 접수 및 삽수 묘목의 생산등이 포함되어 있다. 멜론 및 기타 초본성 과실

생산업(Growing of melons and other herbaceous fruit)(01124)은 멜론, 수박, 참외등 초본성 과실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딸기 생산은 제외하고 있다. 과실 생산업(Growing of fruit)(01131)은 견과(낙화생제외), 딸기를 포함하여 과실수를 재배하면서 각종 과실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감귤, 사과, 배, 견과류, 무화과, 파인애플, 대추야자, 바나나, 대추, 살구, 버찌, 자두, 키위, 애버카도우, 망고스틴, 오렌지, 맨더린, 레몬, 포도, 복숭아, 감, 밤, 프룬, 아몬드, 호도, 딸기등의 재배 및 생산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음료 및 향신작물 생산업(Growing of beverage and spice crops)(01132)은 커피, 차, 코코아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음료용 작물, 코코아, 커피, 녹차, 마태, 향신용 작물, 정향, 생강 등의 생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시설작물 생산업(Growing of crops under special frames)(01140)은 버섯 재배 및 채취, 콩나물 생산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 및 기타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재배활동과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을 수경재배시설, 공장설비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특수한 기술과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일반 토양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작물 재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업종에는 콩나물 재배, 수경재배, 시설작물 재배, 움막시설 재배, 공장식 고정설비 시설 재배, 버섯 재배, 송로 재배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훼작물 및 종묘의 생산 활동은 제외하고 있다.

낙농업(Dairy farming)(01211)은 낙농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 및 젖양을 기르는 산업활동으로서, 낙농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젖을 살균하고 병에 넣어 시판하거나 버터, 치즈, 기타 낙농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젖소 사육, 유용산양 사육 및 생우유 생산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 활동은 제외하고 있다. 육우 사육업(Farming of cattle)(01212)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기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고기소 사육 및 육우 사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 및 양 사육업(Farming of horses, sheep and goats)(01213)은 고기, 모피, 털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말 또는 양을 사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면양, 버새, 산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의 사육활동과 양모 및 마모의 생산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돈업(Breeding of pigs)(01221)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고기 생산을 위하여 멧돼지를 인공적 시설내에서 인위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계업(Raising of chickens)(01222)은 고기 또는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닭을 사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및 계란 생산 등이 포함된다. 기타 가금 사육업(Raising of other poultry)(01223)은 고기나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난육용의 조류(닭제외)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닭을 제외한 가금, 오리, 칠면조, 메추리 등의 사육 활동과 계란을 제외한 조란 생산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봉업(Raising of bees)(01224)은 꿀벌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산업활동으로서, 천연벌꿀생산, 벌꿀관련 생산품, 꿀벌 증식 등이 포함된다. 가금 부화업((Operation of poultry hatcheries)(01225)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거나, 자영방식에 의하여 각종 가금 및 조류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금부화와 결합된 감별 활동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병아리 부화, 꿩 부화, 메추리 부화, 가금 부화, 오리 부화 및 조류 부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양잠업(01226) (Production of silkworm cocoons)은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누에를 치는 산업활동이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축산업(Other animal production n.e.c.)(01229)은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 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꿀벌을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 증식, 양식하는 산업활동이다. 여기에는 개, 토끼, 사슴, 여우, 곰,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환형동물류, 애완용 동물, 실험용 동물 및 관상용 동물의 사육과 개구리 양식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합농업(Growing of crops combined with farming of

animals:mixed farming)(01300)은 축산활동과 작물생산 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으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원예 관련 서비스업 (Horticultural services)(01423)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의 파종, 식재, 육묘, 분식, 전지, 전정, 선과, 적과, 병충해 방제등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 재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 관련 서비스업(Crop growing services n.e.c.)(01429)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농업용 기계장비의 임대와 원예 서비스업 이외의 작물생산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Hunting, trapping and game propagation including related service activities)(01500)은 판매를 목적으로 각종 야생동물과 수생 포유동물(고래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수렵용 동물을 증식시켜 수렵장을 관리, 운영하는 활동 및 기타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도축업(Slaughtering of livestock)(15111)은 고래를 포함하여 각종 짐승을 도축하여 신선,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영 또는 임도살 여부를 불문한다. 여기에는 가축도살,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 것등 도축고기 생산, 고래고기 생산 및 미가공 짐승지방 생산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금 및 소형 육지동물 도살은 제외하고 있다. 가금 도살업 (Slaughtering of poultry)(15112)은 토끼등의 소형 육지동물을 포함하여 각종 가금을 도살(임도살 여부 불문)하여 가금고기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금 도살, 가금고기 생산, 토끼고기 생산, 미가공 가금지방 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곡물 도정업(Husking of cereals)(15311)은 각종 미도정 곡물을 구입하여 도정곡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곡물 도정, 도정곡물 생산, 암맥 생산, 정미 생산 및 임가공을 제외한 정미소 운영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임가공 도정은 제외한다. 곡물 제분업(Milling of cereals)(15312)은 각종 곡물, 건조된 채두류, 과일 및 견과 등을 분쇄하여 이들의 분 및

조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곡물 제분품 생산, 곡물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 생산, 건조된 과일 및 견과의 분과 조분 생산, 건조된 채두류의 분과 조분 생산을 포함한다.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Manufacture of starches and starch products)(15321)은 각종 곡물, 감자, 매니옥 및 기타 식물성 재료로 전분,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전분과 전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분 제조, 글루텐 제조, 덱스트린 제조, 타피오카 제조, 가용성 전분 제조,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품 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Manufacture of bean curd and similar products)(15494)은 콩을 원료로 두부, 유부를 제조하거나 메밀, 도토리 등으로 묵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생선묵 제조는 제외하고 있다. 인삼식품 제조업(Manufacture of ginseng products)(15495)은 백삼, 홍삼, 인삼분말, 인삼즙 및 주스, 인삼차, 인삼발효음료등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기저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다. 여기에는 인삼즙 및 주스 제조, 인삼기저식품 제조, 인삼제품 제조, 인삼차 제조, 홍삼차 제조, 인삼 가공품 제조가 포함되나, 인삼주 제조, 인삼 드링크 제조,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 약제품 또는 인삼에서 추출된 특정성분 제조는 제외하고 있다.

곡물 및 종자 도매업(Wholesale of grain and seed)(51211)은 미가공의 곡물, 도정곡물, 곡물분말,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 종자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곡물 도매, 종자 도매, 기름용 씨 및 열매 도매, 가공 곡물 및 곡분 도매가 포함된다. 사료 도매업(Wholesale of feed)(51212)은 사료용 농산물 및 재료, 배합사료 등 동물용 사료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이며, 과일 및 채소 도매업(Wholesale of fruits and vegetables)(51221)은 과일 및 채소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이다. 고기 도매업(Wholesale of meats)(51222)은 가금 및 기타 조류, 수렵물 및 가축의 도살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입한 고기를 조제 가공하지 않고 냉장, 냉동 또는 분할 및 포장하여 도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육지동물 고기 도매 및 가금고기 도매는 포함되나, 통조림 또는 기타 고기

조제품 도매는 제외되고 있다. 비료 도매업(Wholesale of fertilizers)(51493)은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와 혼합, 화학 및 복합비료 등의 각종 비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고, 농약 도매업(Wholesale of agricultural medicines)(51494)은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성장조절제, 소독제 등의 농업용 약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곡물 소매업(Retail sale of grain)(52201)은 쌀, 보리, 콩 및 기타 잡곡의 곡물과 곡분 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동물용 사료의 소매도 포함하고 있으며, 고기 소매업(Retail sale of meats)(52202)은 소, 돼지, 닭고기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정육점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채소 소매업(Retail sale of vegetables)(52204)은 배추, 무우,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호박, 오이등의 채소 및 고구마, 감자 등 각종 채소류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이고, 과일 소매업(52205)(Retail sale of fruits)은 사과, 배, 감, 꽃감, 대추, 호두, 귤, 자두, 포도등 각종 과일 및 견과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의업(8520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동물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동물병원 및 치료센터, 동물구급소 및 보호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애완동물 치료 및 수의 서비스는 포함되나, 동물사육 관련 서비스는 제외되고 있다.

## 2.2. 자유화 유보 업종의 실태 및 외국인 투자의 영향

먼저 보통작물 생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유보된 것은 이 업종이 무엇보다도 쌀, 보리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쌀의 경우만 생각해 보더라도, 쌀의 국민경제적 위치, 농업생산구조,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업종의 자유화는 유보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5-3)에 의하면 국민총생산중 쌀의 부가가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85년 4.5%에서 1993년 현재 2.1%로 감소하는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 품목으로서 쌀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표 5-3 국민경제와 쌀

	단 위	1985	1990	1991	1992	1993
국민총생산(A)	10억원	79,301	178,262	214,240	238,705	263,861
농업(B)	10억원	8,692	13,262	14,076	15,123	15,951
쌀(C)	10억원	3,594	5,674.9	5,545	5,786.6	5,499.2
C/A	%	4.5	3.2	2.6	2.4	2.1
C/B	%	41.3	42.8	39.4	38.3	34.5

주: 쌀의 부가가치 = 재배업 부가가치 x 재배업중 쌀의 부가가치 비중.  
 자료: 농림수산부.

있는 품목도 찾아 보기는 어렵다. 품목별로 보았을 때, 쌀은 아직도 가장 큰 품목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농업부문 부가가치중 쌀 부가가치의 비중은 1985년 41.3%에서 1990년 42.8%로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1993년 34.5%를 기록하고 있다. 즉, 농업부문 부가가치중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 이상으로 아직도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가소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쌀 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표 5-4)와 같이 1985년에는 약 1/3인 31.8%, 그리고 농업 소득의 약 반인 49.3%를 점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소득 비중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1993년에는 농가소득중 쌀 소득의 비율은 20.3%, 농업 소득에서는 40.8%를 차지하고 있다. 즉, 농가의 소득 구조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쌀은 아직도 농가소득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즉, 쌀 소득을 대체할 만한 작물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가계의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료품비의 지출 비중이 감소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985년 431,183원에서 1993년에는 1,477,8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가계비 지출은 322,558원에서 1,020,953원으로 그리고 식료품비 지출은 111,898원에서 298,391원으로

표 5-4 농가소득과 쌀 소득

단위: 천원

	농가소득(A)	농업소득(B)	쌀소득(C)	C/A(%)	C/B(%)
1980	2,693	1,755	741	27.5	42.2
1985	5,736	3,699	1,824	31.8	49.3
1990	11,026	6,264	3,097	28.1	49.4
1993	16,928	8,427	3,439	20.3	40.8

자료: 농림수산부.

증가하였다(표 5-5). 따라서 소득중 식료품비 지출 비율은 1985년 26.0%에서 20.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즉, 소득 및 가계비 지출의 증가율이 식료품비의 지출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식료품비 지출에 있어서도 소득의 증가에 따라 고단백 식품 및 신선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쌀에 대한 지출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85~93년 기간중 가계비중 쌀 지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4%에서 3.3%로 감소하였으며, 식료품비중 쌀 지출비의 비중은 25.4%에서 11.5%로 감소하였다.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여 볼 때, 도시가계의 지출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식생활이 아무리 서구화 및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주식은 쌀이며, 따라서 도시가계의 지출구조에 있어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큰 것이다.

표 5-5 도시가계비와 쌀 지출비(월평균)

단위: 원

	가계비(A)	식료품비(B)	쌀지출비(C)	C/A(%)	C/B(%)
1980	180,531	77,498	25,186	14.0	32.5
1985	322,558	118,898	30,198	9.4	25.4
1990	685,700	219,500	37,200	5.4	16.9
1993	1,020,953	298,391	34,186	3.3	11.5

자료: 농림수산부.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보통작물 생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개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개시 이후 국내에서 더욱 고조되었던 식량안보 기능의 강화 차원에서도 곡물생산, 특히 쌀의 생산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곡물 도매업의 자유화 유보와 소매업의 부분유보는 국내 곡물 유통 종사자들의 규모의 영세성 및 현대화되지 못한 국내 농산물 유통하에서 국제곡물상을 포함한 선진제국의 자본력이 큰 유통업자들의 국내진출시 예상되는 문제점, 즉 국내 유통업자들의 도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내국인 유통기반의 붕괴등으로 인한 곡물유통의 외국자본 지배 가능성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곡물 유통의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는 쌀의 경우 공영도매시장이 서울에 1개 뿐인 상태이며, 이로 미루어 쌀의 유통이 현대화되어 있지 못하고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등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1993년의 경우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취급물량이 서울시 쌀 소비량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1일 쌀 소비량은 40,000 가마(80Kg)이며, 1993년말 현재 양곡도매시장의 한국양곡과 대한양곡의 1일 평균 취급물량은 4,288 가마 였다. 즉, 1일 평균 4,300가마의 거래를 통한 2개의 지정도매법인과 여기에 속한 166명의 중매인들의 영업수익을 추계하여 볼 때, 양곡도매시장 및 도매시장 참가자들의 영세성을 짐작할 수 있다.

도매업소의 경우 서울에만 385 업소가 산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 역시 서울시의 1일 소비량과 비교하여 볼 때, 이들 업소의 1일 평균 거래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소매업소의 경우 서울시에 9,126 개의 업소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소매업소의 영세성도 짐작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쌀 유통의 참가자들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하에서 쌀의 산지 속이기 및 합성미의 판매등 불합리한 상관행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쌀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곡물의 도·소매업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쌀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등이 존재하고 있는 여건하에서 동 업종을 외국자본에 개방한다면, 곡물 도·소매업은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결과 곡물 유통과 관련한 업종의 자본자유화가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함께 90년대 들어와 나타나기 시작한 쌀에 있어서의 민간유통 기능의 위축등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곡물도정업의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하에서도 가동율이 낮은 점등 경영상태의 취약점등이 자유화를 유보시켰을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정부양곡도정공장의 경우도 규모나 도정능력면에서 계속 감소 및 위축되고 있으며, 임도정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5-6)에 의하면 정부양곡도정공장의 경우 공장수는 1990.4월 408개 에서 1993.5.1일 현재 392개로 3년동안 16개가 감소하였으며, 도정능력은 같은 기간 동안 402만 M/T 에서 366만 M/T으로 감소하였다. 즉, 도정능력의 감소가 공장수의 감소보다 크게 나타났다. 도정업계 전체로 볼 때,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정부양곡도정공장의 연간능력이 공장당 평균 10,000M/T 수준으로써, 선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이와함께 가공능력 대비 실제 가공물량의 비율인 가동율도 1989~93년 기간중 평균 30% 수준 정도로 저위에 있다. 한편, 임도정공장의 경우

표 5-6 양곡도정공장 현황

	능력: 1,000 M/T			
	정부양곡도정공장		임도정공장	
	공 장 수	능 력(연간)	공 장 수	능 력(연간)
1990. 4. 1	408	4,020	16,370	32,846
1991. 4. 30	404	3,739	16,073	32,285
1992. 5. 1	397	3,617	15,318	31,117
1993 .5. 1	392	3,662	14,501	32,609

자료: 농림수산부.

1993년 5월 현재 전국에 14,500여개소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공 능력은 3,200만M/T을 상회함으로써 공장당 평균 가공능력은 2,200M/T 수준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다. 정부양곡도정공장과 임도정공장의 능력을 합산한 가공능력은 3,600여만M/T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의 곡물생산과 비교하여 볼 때, 가동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즉, 편의상 단순히 가공능력과 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1993년의 경우 가공능력은 3,627만M/T 수준이었으나, 곡물생산량은 546만M/T을 기록함으로써, 가동율은 15%수준에 머무는 정도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도정업계는 규모의 영세성과 함께 가동율의 저조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임도정공장의 통폐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도정업계의 시설능력이 과잉되어 있는 여건하에서 농협을 중심으로 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등을 고려할 때, 임도정업계도 경영개선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통폐합노력이 조속히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미국의 도정업계 인사들이 1993년 우리나라 방문시 인천지역의 도정시설을 시찰하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미국 쌀의 도입시 도정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대로 우리나라 쌀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영세소농형태의 생산 양식과 품종의 다변화에 따라 대량상품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품종이 동일한 쌀의 대량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품질의 균일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일 상표 또는 단일 상품으로 대량으로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들이 쌀의 가공 및 유통분야에 대한 참여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예로서는 해태그룹이 연쇄점 사업을 통하여, 미원그룹이 구내식당등 대량소비처의 납품에, 현대그룹이 서산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의 가공 및 판매사업에 그리고 두산그룹이 천안소재 삼원양곡도정공장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대기업들은 쌀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 들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크다는 정부도정공장들은 도매상 및 양곡상 연합회의 지부등에 판매하는 간접판매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부양곡도정공장들의 판매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미국 도정업계의 일부 인사들이 우리의 도정업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시사하는바가 큰 것이다. 일부에서 미국의 도정업자들이 우리 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즉,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쌀시장의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또한 단일 품종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한 즉, 균일화된 상품출하가 가능한 여건등을 활용하여, 양질미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정업계에 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현미상태로 우리 나라에 반입되는 경우 이러한 쌀의 가공을 통하여 신선도도 유지하면서 양질미를 생산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미국 도정업계 인사들로 하여금 인천지역의 도정시설을 시찰하게 한 계기는 아니었는지 고려해 보아야만 한다.

이는 쌀·보리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보통작물 생산업과 함께 곡물 도소매업 및 도정업은 정부의 양곡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대두되었던 쌀개방 문제에 있어서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였던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육우사육업은 한우 생산과 관련된 산업활동으로써, 농업 및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한우의 비중 등을 고려해 볼때 자유화 하기가 어려운 품목이다. (표 5-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우의 생산액은 1992년 현재 약 1.2조원으로서 농업생산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에서는 27%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 업종이다. 특히 한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가 구분,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인 노력이 추진중인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곡물 도매업에서 예상될 수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고기 도매업의 경우도

표 5-7 한육우의 생산액

단위: 10억원

	농업(A)	축산업(B)	한육우(C)	C/A(%)	C/B(%)
1985	12,225	2,966	846	6.9	28.5
1990	17,728	3,921	922	5.2	23.5
1992	21,685	4,611	1,245	5.7	27.0

자료: 농림수산부.

외국의 대규모 육류 유통업자의 국내 진출시 국내 육류유통업자의 유통기반의 붕괴 및 이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내유통 지배가능성등과 함께 고기 도매업의 자유화는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도축업이 1995년부터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연계하여 고려해 볼 때 그 이유는 자명해 진다. 즉, 축산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도축업은 시설 및 기술측면에서 전근대적이며 위생측면에서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와함께 고기 도매업도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즉, 고기 도매시장의 발달도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고기 도매업자란 도축장에서 지육을 중매 또는 중개하는 사람을 일컬을 정도이다. 이와같이 도축 및 도매업이 미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도축업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는 상황에서, 고기 도매업 까지 자유화 된다면 외국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될 소지가 있다.

도축업과 도매업중 하나가 미발달된 경우 축산물 유통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축업은 자유화되고 도매업이 자유화되지 않는 경우 선진자본의 유입여지는 그만큼 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기 도매업의 투자 자유화가 유보된 것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축업으로 들어 온 외국자본이 가공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고기 유통업까지의 확대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지육을 가공하여 상품화시키는 우리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

자본은 가공기술의 미흡으로 인한 상품가치의 저하문제등으로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자본은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가공분야에 진출코자 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는 시설재 및 인력 지원분야가 우선 대두될 것이다. 즉, 발전된 가공기술과 시설재등의 제공을 통하여 국내 축산물 유통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만큼 국내시장에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의 고기 유통분야에 진출했던 곡물메이저중의 하나인 카길(Cargill)을 들 수 있다. 즉, 카길은 일본의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계기로 1990년 일본의 쇠고기 가공과 유통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카길은 쇠고기 가공에서 판매까지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상관행 그리고 소량주문 중심의 거래형태의 벽을 넘지 못하고, 1993년 영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이와같은 예는 카길과 같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유통업체들이 아직도 발전 단계에 있는 우리의 쇠고기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의 자유화 유보는 국내 전분산업의 영세성과 함께 전분의 원료가 되는 고구마 및 감자 생산농가의 소득보호 문제등이 고려되었다. 전분은 쌀,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 곡물류와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서, 각종 가공식품의 원료 및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전분은 화학조미료, 포도당, 과당, 액당, 물엿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빵, 과자류, 아이스크림 및 통조림등 각종 식품의 제조에 있어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전분은 식품으로서 직접 이용됨과 동시에 식료품 공업 및 과자 제조등에 있어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분은 제지업, 제사업, 공업용 풀의 제조, 치약 및 세제등 화장품업, 의약품의 제조 등 각종 공업용품의 제조에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전분의 용도는 수없이 많으며, 따라서 전분산업은 국민경제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원료산업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농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농업부문은 전분의 원료가 되는 각종 곡물 및 서류등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곡물 및 서류의 1차 가공을 통한 전분의 제조는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에서의 전분 생산은 주로 고구마와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감자와 소맥을 원료로 생산되고 있다.

고구마 생산은 (표 5-8)과 같이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당면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면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구마 전분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이 결과 고구마 전분산업 및 고구마 재배농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은 중국으로부터의 당면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조치를 1991년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고, 그 결과 1992.1월부터 1993.12월 까지 관세를 인상하고 1992.4월부터 당면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의 자급률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옥수수 전분 제조의 경우도 수입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옥수수 전분은 고구마 전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통상 지하전분(땅속에 묻혀 있는 작물 즉, 고구마등에서 추출된 전분)이 지상전분(땅위에 있는 작물 즉, 옥수수등에서 추출된 전분)보다

표 5-8 고구마 및 감자 생산량

단위: ha, M/T

	고 구 마		감 자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1980	55,019	1,103,090	37,391	446,104
1985	33,486	786,920	31,104	575,129
1990	18,969	431,689	21,091	370,520
1993	14,132	282,157	27,040	622,489

자료: 농림수산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지하전분의 가격이 지상전분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므로 전분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서는 고구마 전분을 옥수수 전분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면업계에서도 나타나 바 있다. 이 결과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분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의 확보 차원에서 생산농가, 전분 제조업체 및 전분 수요자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분 및 전분 제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이 투자가 유보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볼 때 전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규모 확대와 이를 통한 생산비 절감 노력과 함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분업체들에 대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료 농산물, 특히 고구마의 안정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구마 생산지역에서의 적정가격 유지와 함께 종자의 저가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분용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당면 제조업계의 일부 기업이 중국에 합작투자형태로 진출한 후, 중국에서 생산한 당면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는 전분제조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분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타결의 결과 관세화 품목으로 전환됨으로써 일부 업체가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것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3. 투자자유화 업종별 투자 가능성 및 파급효과

이상의 8개업종에 대한 자유화 유보조치가 해당산업의 경쟁력취약 및 이를 위한 보호에 기초한다면 기타 업종의 자유화 조치는 해당업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전반적으로 볼때 경쟁력은 취약하나 OECD 회원국들의 자유화 수준과 비교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자유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명제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대상업종의 선정기준에서 살펴 보았듯이 외국인 투자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국내농업에 영향이 적은 업종 및 국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부터 투자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일종의 교육지책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3.1. 낙농업

우리 나라의 젖소사육 규모는 (표 5-9)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3년 275천두에서 1994년 9월 현재 557천두로 두배 이상 증가한 반면 사육농가는 29.5천호에서 오히려 26.6천호로 감소하여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9두에서 21두로 확대되었다. 이와같은 추세는 규모별 농가와 사육두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1985년까지 10두 미만의 영세규모의 농가와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모두 감소한 반면 30두 이상 규모는 농가와 사육두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규모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1년 현재 181천호가 9,992천두를 사육하여 호당 평균 55두를 사육하는 미국이나 그밖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외국에 비해 아직도 규모가 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우유 생산량 역시 1992년 현재 1,816천 톤으로 1983년의 712천 톤에 비해 1.6배나 증가하였으나 미국의 68,741천 톤에 비해 3%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국내 낙농여건은 젖소나 우유생산량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다. 우선 우유생산에 필수적인 粗飼料를 생산할 수 있는 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높은 땅값이 초지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두당 평균 사료재배용 초지소요 면적을 300평(외국의 경우 두당 1 에이커, 약 1230평)으로 축소한 기준을 적용해도 현재의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약 5만 5천여 헥타가 필요하나 실제 초지면적은 소와 말 사육용까지 포함하여 약 76,000 헥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초지 23,000여 헥터를 제외하면 국내 전체 초지가 젖소 사육을 위한 사료재배용 초지 면적에도 미달한다. 그나마 높은 땅값과 인건비로 인하여 건초의 생산비가 높아서 대부분 수입 건초에 의해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표 5-9 우리 나라 젓소사육 규모별 현황

단위: 천호, 천두

연 도 별	1~9	10~29	30~49	50~99	100두이상	계
1983	20.6 (90.8)	7.7 (119.1)	0.8 (30.1)	0.3 (17.5)	0.1 (17.3)	29.5 (274.8)
1985	31.0 (135.7)	11.2 (173.8)	1.1 (41.3)	0.3 (21.8)	0.1 (17.5)	43.8 (390.1)
1987	21.7 (117.2)	14.2 (230.8)	1.7 (60.6)	0.5 (33.7)	0.1 (21.0)	38.1 (463.3)
1989	15.9 (89.0)	17.4 (291.2)	2.1 (75.3)	0.5 (35.7)	0.1 (24.0)	36.0 (515.2)
1991	10.0 (57.0)	17.1 (295.3)	2.5 (89.2)	0.5 (32.5)	0.1 (21.8)	30.2 (495.8)
1993	5.9 (34.5)	17.8 (318.9)	3.9 (133.1)	0.7 (44.2)	0.1 (22.6)	28.6 (553.3)
1994	5.0 (28.3)	16.5 (302.1)	4.3 (155.9)	0.8 (48.4)	0.1 (22.6)	26.6 (557.3)

주: ( )속은 사육두수임.

자료: 농림수산부, 가축통계, 1994. 9.

기후조건 역시 여름의 폭서와 겨울의 혹한이 젓소 사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적합한 기후라 할 수 없다. 그 밖에 최근 급등한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3D업종이면서 휴일이 없는 젓소사육업은 인력난까지 겹쳐 업계의 고충을 증대시키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우유가격은 4급 기준 원유 1kg 당 1980년 266원에서 1993년 394원으로 약 48% 상승하여 같은 기간중 농수산식품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1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이 1965년 0.3kg에서 1993년 45.03kg으로 15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격의 상승률이 낮은 것은 착유두수가 1975년 32,000두에서 1993년 274,000두로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공품의 중간재나 원료로 쓰일 유당, 탈지분유 및

유당분말의 수입이 1975년의 3,323천 달러에서 1993년 74,825천 달러로 스무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가공 원료인 카제인의 수입은 1975년의 253천달러에서 1993년에는 32,769천 달러로 130배 가까이 증가하여 국내 생산 원유 및 시유와 유가공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우유가격은 kg당 232원인 미국보다 70% 정도나 높은 수준으로 국제경쟁력이 아주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1995년부터 대부분의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가공용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시유의 비수기인 동절기에는 잉여 원유로 인해 우유 가격이 폭락하는 우유파동이 예상되는 등 국내 낙농업이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이상과 같이 불리한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1997년 이후에도 일반 낙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해 산출한 우유 생산업의 투자수익률은 한국이 1.75, 미국 2.12, 그리고 일본이 0.83으로써 현재와 같은 가격체계 및 생산구조하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외국자본의 낙농업 진출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sup>3)</sup>. 그러나 우유의 국내가격이 주요 외국에 비해 높고 막대한 자본과 함께 선진 낙농기술과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할

---

3) 투자수익률은 조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을 자본용역비로 나눈 값으로서 자본용역비는 우리 나라의 경우 차입이자, 감가상각, 고정자본이자 및 유동자본이자로 이루어지며 일본은 상각비, 지불이자 및 자기자본이자로 구성되고 미국은 이자, 농가경상자본비용, 자본대체비용, 운영자본비용 및 기타 비토지자본비용으로 이루어짐.

자료: 축협중앙회, "1993년도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 1994.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平成 6년 7월.

USDA,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Cost of Production-Major Field Crops & Live Stock and Dairy, 1991, ERS, 1994.

USDA, Agricultural Statistics, 1993.

경우 영세한 국내 낙농업자들은 노동인력 부족과 원유가 하락 등으로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제품 가공분야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주)와 일본 기업의 기술제휴 및 합작에 의한 야쿠르트 생산, 매일유업(주)과 뉴질랜드 기업의 치즈공장 합작 및 한국-덴마크 기업의 유처리장 합작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가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내업체와의 기술제휴나 합작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UR 농업협정의 이행계획서에 의해 치즈 및 조제분유는 1995년부터 현행관세율 40%로 수입이 자유화되고 유장분말은 현행관세율 20%를 적용하는 시장접근물량을 1995년 23,000톤에서 2004년까지 매년 10%씩 증가시키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99%의 한도양허 관세율(ceiling binding)을 적용하되 2004년까지 이를 49.5%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버터류는 1996년 7월부터 관세화하고 (관세율: 1995년 99%, 2004년까지 89%로 감축) 전지 및 탈지분유는 1995년부터 자유화하되 관세율은 1995년 220%에서 2004년까지 176%로 감축하는 등 유제품 및 유가공품의 수입이 대부분 개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국내에 직접투자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 대부분의 입맛이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영양가 높은 저온살균유보다 장기간 보관 및 수송이 비교적 용이한 고온살균유(멸균유)에 길들여져 있어 외국 낙농업자들로서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의 국내 업계에서 멸균유의 유통기한을 현행 7주에서 8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직접투자에 의한 낙농업 경영보다 완전 가공품의 수출이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외국인이 유가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하건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건 1995년부터 국내 유가공업계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 산유량의 약 7%를 차지하는 치즈생산이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될

전망이며 연말까지는 음용유 비수기에 생산되던 전지분유의 생산도 거의 중단될 것이고 이는 다음해의 음용유 성수기때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더 많은 외국산 우유를 수입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쳐 상당수의 영세 또는 소규모 낙농가가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목우 생산분야 역시 고급 유전공학적 기술과 시설 및 다양한 유전 자원의 축적 등의 측면에서 영세한 국내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직접투자의 대상으로 유망한 분야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1만두 이상의 종목우(금액상 2,000만 달러 이상)를 수입했으나 1985년 이후 10여년째 종목우 수입실적이 연평균 20여두(약 833천 달러 상당)에 그치고 있지만 두당 가격은 오히려 두배 이상 상승한 것은 고급 우량 종목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정란을 이용한 품종개량 기술은 보통 3-4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품종개량기간을 당대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끼소의 암수를 사전에 조정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국내 종목우 시장을 단기간에 비교적 소자본과 적은 노동인력으로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일반 낙농가는 단기적으로 우량종 젖소로 인해 우유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국가적, 장기적으로는 유전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입을 수밖에 없는 손실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낙농업 진출에 수반되는 토지 보유와 증권투자 등 財-Tech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그것은 농업외적인 대응방안, 예컨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제한, 또는 부동산관련 세제개선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결국 낙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유화는 노동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우유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우량종목우와 가공기술을 통한 품질경쟁까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제한된 국내 낙농가 들로서는 전업적 가족노동력만으로 각종 현대식 자동화설비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정규모(착유우 30두 포함 50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가격경쟁에 나서는 한편 지역별 낙농가들의

결속을 강화하여 지역시장에 대한 소량의 고품질 우유 및 유가공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지역독점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수입우유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품질 경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UR 협정상 허용되는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수기(12월-2월) 전체 산유량의 약 30%에 이르는 전지분유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3.2. 양돈업

우리 나라 양돈업은 (표 5-10)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3년 54만여 가구가 365만여두를 사육하여 호당 평균 7두 미만의 영세한 규모가 지배적이었으나 규모확대정책에 힘입어 1994년 9월 현재 5만6천여 농가가 607만여두를 사육, 평균 108두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모별 농가 및 사육두수의 분포와 그 변화를 보아도 1987년까지는 50두 미만의 영세규모 농가가 전체의 95%, 전체사육두수의 32%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전체 농가의 70%, 사육두수의 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300두 이상 1,00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1983년 659가구가 325천두를 사육하여 전체 농가의 0.1%, 사육두수의 9%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 현재 4800여 가구가 250만여두를 사육하여 농가수에서 전체의 8.4%, 사육두수는 41%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1000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가의 비중도 같은 기간중 0.02%에서 1.4%, 사육두수의 비중은 12%에서 29%로 각각 증대하여 국내 양돈업의 대규모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2년 현재 25만여 가구에서 6000만두를 사육하여 호당 평균 240두로 우리 나라의 두배가 넘는 규모를 보인다. 규모별로도 1000두 이상의 농가가 비중은 4.7%에 불과하나 전체 사육두수의 47%를 점하는 반면 100두 미만의 영세 규모 농가는 전체 농가의 62%나 되지만 사육두수의 비중은 5.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비육돈이 기업농 형태의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0 양돈업 규모별 농가 현황

단위: 천호, 천두

연도	4~49	50~299	300~999	1,000두 이상	계
1983	528.3 (1,858.1)	10.3 (1,032.9)	0.7 (324.6)	0.1 (433.4)	539.4 (3,649.0)
1985	241.5 (806.7)	8.5 (921.8)	0.9 (462.9)	0.2 (661.3)	251.2 (2,852.8)
1987	288.8 (1,374.4)	12.3 (1,313.5)	1.6 (752.8)	0.3 (840.7)	302.9 (4,281.3)
1989	181.2 (1,019.0)	13.9 (1,611.5)	2.5 (1,184.9)	0.4 (985.7)	197.9 (4,801.1)
1991	113.4 (692.8)	12.1 (1,514.8)	3.5 (1,685.1)	0.5 (1,153.9)	129.5 (5,046.0)
1993	52.6 (377.4)	12.7 (1,735.5)	4.5 (2,287.9)	0.6 (1,526.7)	70.4 (5,927.5)
1994	39.9 (312.6)	11.0 (1,502.8)	4.8 (2,498.2)	0.8 (1,755.2)	56.4 (6,068.7)

주: ( )속은 사육두수임.

자료: 농림수산부, 가축통계, 1994. 9.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1965년 1.9kg에서 1993년 13.9kg으로 7배 증가하고 사육 두수는 같은 기간 동안 138만 2천두에서 592만 8천두로 3.3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비육돈 산지가격은 1965년 생육 100kg당 1만원에서 1993년에는 141천원으로 14배 증가하여 연평균 10%의 상승률을 보였다. 1993년 현재 미국의 두당 가격 71달러(생육 100kg 기준 73500원)와 비교할 때 두배 가까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종돈 수입물량 및 금액은 1982년 712두, 511천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에는 1,060두, 264만 9천 달러에 이르렀다. 고급육 및 우량 종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두당 평균 수입가격도 718 달러에서 2500달러로 3.5배 증가하여 양돈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때맞춰

국내 종돈 시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 비육돈 생산업은 특별한 노우하우가 필요하지 않으며 땅값과 인건비가 높고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많은 규제를 받는 업종이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행 규정상 양돈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母豚 기준 1,000두를 넘는 대규모 사육이 금지되어 있어 규모화에 의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마저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1997년 1월부터 양돈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어도 그 실현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이다. 통계상으로도 비육돈 사육의 투자수익률은 300두 이상 규모의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1.67로 일본(3.2)의 절반에 불과하였다<sup>4)</sup>.

업계에서는 일반 양돈업보다는 도축업과 육가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도축업 자체만으로는 현재로도 시설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어 채산성이 낮아 사료부터 도축 가공까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계열화가 필수적이거나 정육점 체계 등 국내 육류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외국의 업체들은 1995년 21,930톤, 1996년 29,240톤, 그리고 1997년 6월까지 18,275톤으로 되어 있는 수입쿼터가 끝나고 1997년 7월부터 완전자유화되는 생육수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또 다른 한 가능성은 일본의 냉장육(Chilled Pork) 시장 진출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송기간이 가장 짧은 한국에서 양돈을 하는 것이다. 현재 대만과 미국으로부터 냉장육을 수입하여 냉동육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일본의 냉장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세계적인 돈육 생산, 가공, 판매회사인 덴마크의 ESS Food사에서 한국에서 양돈 계열화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그들의 일본 시장내 기존 냉동육

---

4) 축협중앙회, 1993년도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1994 및 일본농림수산성,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 平成 6年 7月, 참조.

점유율이 잠식될 것이라는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초저냉장 상태에서 유통가능 기한이 20-25일인 냉장육을 일본까지 수송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대만이 5-6일, 미국이 15일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3-4일에 불과하며 더욱이 대만은 1996년까지 돈육의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대일 냉장육 수출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으며 포장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미국이 일본에 수출되는 냉장육 물량을 증대시킬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이 있는 고급 냉장육을 생산할 수 있다면 대일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돈 분야는 국내 종돈 생산농가의 규모가 영세하고 육종기술 및 가축위생시설이 낙후되어 외국(특히 덴마크)의 특정병원균부재 (Specific Pathogen Free) 종돈 등 고급 유전공학 기술과 위생학적으로 생산된 종돈의 국내 진출전망이 밝으며 양돈업계에도 우량종 보급 및 육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5)</sup>.

이와같이 양돈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능성은 종돈 생산 분야와 사료에서부터 도축, 가공분야까지 수직적으로 계열화하여 SPF 돈육 등 완벽하게 위생처리된 돈육을 일본시장에 냉장육으로 수출하고 잔여육을 국내 소비 및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느정도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특히 2000년대 일본의 돈육 자급률이 약 40%로서 1970년대

5) 덴마크의 경우 SPF 종돈은 만성적인 소모성 질병이 없고 최상의 위생상태를 유지하는 번식농장에서 생산된 종돈으로서 SPF협회를 통해서만 종돈거래가 이루어지고 특별시설이 설치된 SPF전용 수송차량에 의해서만 운반되며 차량실내는 고도의 정밀공기여과장치와 향상양압(plus air pressure)를 유지함으로써 농장간의 질병전염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이재옥 외 1988, PP.65-6).

6) 국내 돈육시장은 냉장육과 냉동육의 가격차이가 별로 없으며 부위별로도 삼겹살이 가장 비싸지만 일본에서는 냉장육이 냉동육보다 약 20%정도 비싸며 부위별로도 등심 및 어깨등심이 가장 비싸고 수입돈육은 주로 가공용으로 이용되지만 고급햄은 냉장육을 이용하기도 하여 돈육에 대한 기호가 국내에서보다 훨씬 다양화, 차별화되어 있음.

수입자유화 이후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연말에 등심 및 어깨등심 부위의 수입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소비와 부위별로 보완적이므로 잔여육 활용에 의해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도 냉장육과 SPF 돈육 등 고급육에 대한 품질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생처리시설의 여력이 없는 영세농과 소규모 양돈농가의 대량 도태가 예상되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종돈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도축장과 가공공장들이 첨단 자동화 시설에 의해 보다 위생적인 돈육 및 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생산자들의 직영점 설치로 인해 정육점 위주의 육류 유통체계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양돈협회의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사육 규모가 6000두 이하일 경우 연리 5%인 축산진흥기금의 원리금조차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양돈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향후 심각하게 대두될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동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량종돈을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유전공학, 생명공학 및 수의학 등 관련 학문들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도축장과 가공공장의 자동화, 위생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날로 높아가는 고급육, 청정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서 국내 양돈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미원햄이 개발, 시판중인 “하이포크”의 경우 거세에 의해 돈육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고 어분이 첨가된 사료에 의해 육질을 향상시킴으로써 20~30%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역시 값이 비싸도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3.3. 양계업

우리나라의 양계업 현황은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에 54만여 가구가 4,924만수를 사육하였으나 사육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규모는

표 5-11 우리 나라 양계업 규모별 현황

단위: 호, 천마리

연도	5,000수 미만	5,000~50,000수	50,000수 이상	계
1983	535,560 (14,374)	2,757 (28,649)	52 (6,216)	538,369 (49,239)
1985	299,991 (11,519)	2,712 (29,228)	72 (10,334)	302,775 (51,082)
1987	265,326 (8,668)	3,283 (36,975)	95 (13,681)	268,704 (59,324)
1989	141,002 (6,956)	3,571 (40,978)	105 (13,755)	144,678 (61,689)
1991	211,263 (6,972)	4,230 (52,327)	123 (15,556)	215,616 (74,855)
1993	187,933 (5,935)	3,632 (51,468)	143 (15,543)	191,705 (72,945)
1994	187,035 (5,614)	3,802 (55,026)	163 (16,118)	191,000 (76,758)

주: ( )속은 사육두수임.

자료: 농림수산부, 가축통계, 1994. 9.

커져서 1994년 9월 현재 사육농가는 19만 1천호, 사육 마리수는 7,676만 마리로 증가하여 호당 평균 사육 마리수는 91수에서 400수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추세는 사육 규모별로 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83년에 5000수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육농가가 전체 양계농가의 99.5%인 53만 6천여 가구에 이르렀으나 사육 마리수는 전체의 29.2%인 1437만 마리에 불과하였다. 5000수~5만수 미만의 중간 규모 농가는 전체의 0.5%인 2천8백여 가구, 사육 마리수는 58%인 2865만 마리로서 전체 사육 마리수의 절반 이상이 중간 규모의 농가에서 사육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만수 이상의 대규모 양계농가는 0.01%에도 못미치는 52가구에 불과하였으나 사육 마리수는 622만여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리수의약 8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4년 9월 현재 소규모 사육농이 97.9%, 187천여 호로 역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육 마리수에서의 비중은 7.3%인 561만여 마리로 감소하였으며 5000수 이상, 5만수 이하의 중간 규모의 농가는 전체의 2%인 3800여 호로 증가함과 동시에 사육 마리수의 비중도 전체의 72%인 5500만여 마리로 증가하였다. 또한 5만수 이상의 대규모 사육농가도 0.1% 정도인 163가구에 사육 마리수는 전체의 21%인 1612만여 마리로 증가하여 양계의 규모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닭 사육 마리수는 1983년 3억 6500만여수에서 1992년에는 3억 6400만여수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안정되어 우리나라의 총 사육 마리수의 거의 5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사육 닭의 종류별로는 산란계가 1983년 2,827만여수에서 1994년 4,300만여수로 약 52% 증가하였고 육계는 1983년 1,674만여수에서 1994년 2,792만여수로 증가하여 약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같이 양계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량종계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서 1981년 20만 6천수 (U\$ 206,000)였던 종계수입이 1992년에는 93만 6천수 (U\$ 4,705,000)로 4배이상 증가하였고 마리당 평균 수입가격이 U\$1.00에서 U\$5.03으로 급증한 탓에 수입금액은 무려 22배나 증가하여 1992년의 종계입식은 모두 512만여수나 되었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다른 육류소비와 같이 소득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65년 0.5kg에서 1993년 5.5kg으로 연평균 9.0%의 성장률을 보여 쇠고기(6.3%)와 돼지고기(7.5%)의 소비량보다 더 급속히 증가하였다. 닭의 산지 가격은 kg당 1970년 203원에서 1993년 971원으로 연평균 7.0% 상승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중의 소 산지가격(연평균 13.2%)과 비육돈 산지가격(연평균 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83년 50.7파운드(약 23kg)에서 1992년 68.4파운드(약 31kg)로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생육 kg당 1983년 229원에서 1992년 254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미국의 1인당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5배를 넘는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및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양계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생산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kg당 983.2원으로 미국의 540원보다는 80%정도 높지만 일본의 1491.9원에 비해서는 3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운임과 보험료, 관세 등을 포함한 예상 수입가격은 미국산이 1680원으로 국산의 1771원에 비해 약 5%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달걀 생산은 1965년 856백만개에서 1993년 8,132백만개로 연평균 8.4% 증가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30개에서 184개로 연평균 6.7%씩 증가하였다. 그 결과 달걀 산지가격은 10개당 88원에서 486원으로 연평균 6.3%의 비율로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가격은 1980년 387원에서 1993년 692원으로 연평균 4.6% 상승하였다. 미국의 경우 달걀 생산량은 1983년 566억개에서 1992년 588억개로 증가한 반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61개에서 235개로 감소한 결과 소비자 가격도 A 등급 대란(grade A, large)이 1다스당 75.2센트(601원)에서 65.4센트(523원)로 하락하였다.

달걀의 생산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51.3원으로 미국의 31.4원보다는 60%정도 높지만 일본의 99.2원보다는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원가절감을 위해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 규모화, 양계시설의 전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동시에 사료생산으로부터 우량종계 개발, 사육 및 도계와 가공에 이르는 계열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sup>7)</sup>. 1인당 소비량도 일본(1991년 기준 326개), 프랑스(249개), 독일(244개)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산란계를 중심으로 하는 양계업의 전망은

---

7) 한국양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달걀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63% (31.4원), 미국이 60% (18.9원), 일본이 52% (51.7원)으로 우리나라의 사료비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달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료비를 절약하거나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디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 및 노임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점차 고조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양계업 직접투자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비육우나 낙농 그리고 양돈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하에서 육계건 산란계건 단순한 사육으로는 채산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계사육업의 자본수익률은 20,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0.34이고 산란계의 자본수익률은 15,000수 이상을 사육할 경우 0.21로서 일본의 계란생산 자본수익률 0.06보다 높게 나타났다<sup>8)</sup>. 또한 국내 양계업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의 자동화, 전문화가 미흡하여 외국의 대규모 자본이 첨단 양계기술과 결합하여 유입될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을 어느정도 높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량 종계개발로부터 부화, 생산, 도계 및 가공,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시킬 경우 양계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 등의 자본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국의 다국적 축산기업인 샤론 포랜드(CP)그룹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이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닭고기 등 축산물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sup>9)</sup>. 이 보도에 따르면 연간 약 3억마리, 5천억원 규모의 국내 육계시장이 미원마니커와 (주)하림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금과 기술이 열악한 10여개 영세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에 사료공장 50여개와 종계장, 부화장, 육계계사, 그리고 도계장 등 현대식 설비를 갖춘 CP그룹이 진출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

8) 자본수익률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조수익과 생산비 및 자본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어야하나 일본의 경우 달걀에 대한 자료만 산출이 가능하고 미국은 육계와 산란계 모두 자료를 구할 수 없었음.

9) 중앙일보 1994년 11월 22일자 참조

예상된다. 이 그룹은 홍콩시장에 진출한 뒤 1년만에 시장점유율을 60%이상 차지했던 만큼 한국시장의 급속한 잠식이 우려된다. 이들은 이미 시장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품종인 하이라인(Hy-line), 디캘브(DeKalb), 필취(Pilch), 아버에이커(Arbor Acres) 등의 개발을 마친 상태이며 도계로부터 가공, 판매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닭고기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업과 관련하여 외국 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분야는 종계생산업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만 종계수입이 1981년 20만 6천수(U\$206,000), 1986년 39만 7천수(U\$397,000)로 수입가격이 마리당 평균 1달러 수준이었으나 1990년 79만수(U\$4,092,000), 1992년 93만 6천수(U\$4,705,000)로 수입량의 증가에 따라 마리당 평균 수입가격이 5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종계입식이 1989년의 경우 수입종계를 합해서 산란계 50만 7천수와 육계 266만여수 등 316만여수에서 1992년에는 산란계 68만수, 육계 444만수 등 모두 512만여수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입식되는 종계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입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외국에서 개발된 원종계와 종계 등을 국내에서 사육 판매하는 것이 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4. 기타 경종 농업

#### 3.4.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 생산업

우리나라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 생산업의 재배현황은 1992년 현재 약용작물이 11,816ha, 섬유작물이 639ha, 유지작물 108,663ha, 그리고 녹차 597ha 등이다. 그밖에 공업용 원료작물 등과 관련된 기타 작물 생산업은 우리 농업의 기계화가 수도작을 위주로 진행되어 온 탓에 아직도 비교적 노동집약적 생산분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도 수익성이 낮아 외국인의 투자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우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재배기술을 축적해야 하고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여야 하며 작부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특작분야를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4.2. 채소작물 생산업과 화훼 작물 생산업

우리나라의 시설원에 농가는 면적 0.5ha 이하의 영세 규모가 84,941호로 전체 시설원에 농가의 87.7%, 0.5ha 이상의 농가가 11,877호로 12.3%로서 다른 작목과 마찬가지로 규모면에서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훼작물 생산 농가는 1992년 현재 1만 1천호로서 재배면적은 4,300ha이며 생산량은 절화류 1,742백만본, 분화류 150백만본, 구근류 143백만구, 종자류 224백만주 그리고 관상(화목)류 8천만주였다.

화훼중에서 蘭재배업은 경쟁국들과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배농가의 규모가 작고 품질이 낮은 편이며 기술의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도 蘭재배 농가의 규모는 작지만 기술 축적이 잘 되어 있어 품질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훼류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지만 특히 蘭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수요가 많고 더욱이 고품질의 蘭은 가격과 무관하게 선호되고 있다. 蘭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품질의 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와의 교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특히 육종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을 조직배양을 통해 복제하여 재배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서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같이 수출 시장 개척으로 蘭재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蘭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현재 미국, 홍콩, 화란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일본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점점 고급화 되어가는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할 때 고품질의 화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품종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기반의 정비 및 경영규모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전업농을 육성해야 하는 등 각종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지가격과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을 제외하면 1997년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어도 채소작물생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가능성은 낮으며 화훼의 경우도 재배시설 투자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어 1996년 이후 단기적으로는 투자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의 자본수익률 차이가 더 커짐에 따라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채소작물생산업은 외국 자본의 진출시 함께 도입될 선진 재배기술과 경영기법 및 우량 종자의 보급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영세소규모 채소재배 농가들은 가격 하락 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훼산업은 재배기술과 시설이 외국에 비해 낙후되어 수출규격품과 우량품의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외국인 투자와 함께 선진 재배기술의 보급과 우량종묘의 공급을 통해 국내 화훼산업의 선진화와 품질향상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될 경우 화훼작물 생산업에 대한 다른 가능성은 이또쓰, 미쓰이, 산토리 등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자국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미 태국과 하와이, 필리핀 등에 직접투자하여 각종 화훼류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농업의 국제화, 근대화에 실패(보다 정확히는 失機)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가족농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대외경쟁력의 부족으로 상당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대기업의 농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할 명분과 시기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화훼류의 경우 2000년대에는 국내 수요의 6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속히 기업농화 국제화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외국산 화훼나 외국 기업의 시장 침투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대상 품목들은 주로 국화, 백합과 같은 절화류와 蘭종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는 첫째, 영세 소규모 국내 생산자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화훼생산업의 재배기술은 외국에 비해 뒤지지 않고 시설을 위해 필요한 자본외에는 특별히 많은 자본을 요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국내 소규모 재배자들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오히려 그동안 우리나라가 화훼류의 종자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덕분에 누려온 복제 종자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데서 오는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재배기술과는 달리 고급기술이면서 많은 시설과 자재, 자료 등을 요하는 화훼류의 육종분야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 호주, 일본 등을 통해 신품종을 도입해왔다. 많은 농가들은 종자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는 복제품을 사용했으나 향후 국내 화훼류 생산업에 대한 투자가 자유화되고 OECD의 종자규범에 가입하게 될 경우 복제비용의 두배 이상되는 로얄티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 자유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신품종의 도입등에 의해 화훼류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화훼시장이 선진화되어 품질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선진 농업이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수출시장을 소홀히 한 결과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이라는 격변에 접하여 곤경에 처하게 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3.4.3. 과실생산업

과실생산업의 국내여건을 살펴보면 1992년 현재 과수 재배농가가 24만호이고 재배면적은 148천ha였으며 생산량은 209만톤으로 나타났다. 다른 작목과 마찬가지로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0.6ha의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대한 수요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면서 품목별로도 소비의 다양화와 고급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및 상품성 향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과수는 영년생 작물로 식재후 3년-5년 이상이 경과해야 수확이 가능하고

최성과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1995년부터 자유화되어도 투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수 고유의 특성상 기계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국내산 과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신 우량품종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자동화 등 영농기술의 개발 및 전파와 수확후의 품질 향상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

#### 3.4.4. 종묘생산업 및 종자도매업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작물 종자는 국가기관(종자공급소)에서 직접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채소와 화훼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종묘회사는 1993년 현재 46개사가 진출해 있다. 채소류 및 화훼류를 포함한 국내 종묘시장 규모는 약 1억달러 정도로 비교적 큰 시장이며 종묘생산비가 주요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일본보다는 낮아서 품종에 따라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종묘도 있다. 그러나 국산 종자가 일본으로 수출될 때 고유 brand로 수출되는 것은 거의 전무하며 벌크상태로 수출된 후 일본상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종묘생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될 경우 일본의 종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우선 토지가격과 인건비가 일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고급 노동력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종묘생산에 필수적인 현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데 따른 자산소득을 기대할 수도 있어 투자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이나 EU, 일본 등 종자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옥수수를 비롯한 1대 잡종 종자를 쓰는 작물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어 생산자인 농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특히 선진국의 종자 업체와 국내 업체간에 합작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기술제휴를 통하여

상호 협력체제가 구축될 경우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우수하고 자본력이 큰 선진국의 종자회사가 국내에 단독으로 투자할 경우 기반이 취약하고 규모가 작은 국내 종묘업체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건 국내 종묘회사의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와 국내의 전통적인 육종소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의 구인난에 허덕이는 국내업체로서는 외국회사의 진출 자체만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육종소재가 이들의 진출과 함께 더 급속히 고갈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4.5. 멜론 및 초본성 과실 생산업과 시설작물 생산업

국내 멜론재배 농가는 1992년 현재 1,651호이며 딸기재배 농가는 16,239호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작물 생산업으로서 수경재배 시설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업종으로써 1992년 11호의 농가가 9.2ha에, 그리고 3개 기업체에서 2.5ha에 각각 수경재배 시설을 하여 주로 상추를 비롯한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다. 이와같이 총 11.7ha에 불과한 수경재배시설 면적은 일본의 600ha, 화란의 2,500ha, 그리고 덴마크의 1,200ha나 심지어 대만의 35ha보다도 비교가 안될 만큼 좁아 국내 시설작물 생산업의 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시설작물 생산이란 농업부문 중 토지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 분야로서 지가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교통과 통신, 전기와 물 등 농업생산과 판매 및 기타 활동에 필수적인 다른 여건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97년 시설작물 생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면 기술 수준이 높고 자본 규모가 큰 선진국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와 비교하여 토지가격 및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또한 대량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 자본의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내에서 재배된 수박의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45% 정도 비싸며

노지수박의 경우 일본이 85%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자본이 자국에 필요한 농산물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멜론 등 초본성 과일이나 시설작물 모두 선진재배기술과 경영기법을 국내에 전파하는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과채류 중심의 외국 시설작물 생산업체에 의해 국내 영세업체의 타격도 예상된다. 또한 외국 자본의 투자로 인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농산물 수급상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에서 업종별로 외국자본의 진출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업종에 구별없이 외국자본이 진출시 예상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국내농업생산에 있어 공통적인 현상이 생산자의 규모의 영세성, 자본 및 경영능력 등의 취약점등인 것이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의 진출시 예상되는 문제가 농가소득원의 잠식 및 이에따른 농가경제의 악화 가능성 등이다. 또한 농업생산자의 의욕 저하로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외국자본이 운영(또는 지배)하는 생산업체에 고용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로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중 경쟁력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개발을 통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는 있으나,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 3.5. 기타 축산관련 산업

#### 3.5.1. 기타 가금 사육업

기타 가금 사육업은 닭을 제외한 가금, 즉 오리, 칠면조, 메추리 등의 사육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 등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생산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바, 오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육마리의 수가 1987년 585,912수에서

1991년에는 1,188,655수로 증가한후 1992년 현재 1,045,003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사육농가의 수는 동기간 동안 23,683호에서 12,706호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육농가의 수는 감소하면서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여 사육농가의 경영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칠면조의 사육 농가는 1천호에 사육 마리수는 1만 1천수인 것으로 집계되어 호당 평균 1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료효율이나 생산비 측면에서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이며 따라서 사육시설의 자동화, 우량 오리병아리의 공급 및 농가부존자원을 사료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등을 통한 경영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오리 사육에 관한 한 비교적 앞서 있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투자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토지가격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 등 칠면조 사육이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에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칠면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단기간에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그 실현 가능성 역시 낮다고 하겠다.

### 3.5.2. 양봉업

양봉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1992년말 현재 43,768호이며, 사육군수는 596,512군이다. 우리나라의 양봉여건은 밀원(蜜源)식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좋은 여건은 아니며 따라서 일년내내 벌꿀을 생산하는 지역과는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하에서도 양봉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밀원식물의 증식, 밀원식물 분포를 고려한 양봉업의 적정배치 및 우리 고유의 맛을 갖는 고급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외국 자본의 진출과 관련하여 볼 때 열악한 국내 생산여건상 외국자본의 투자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5.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축산업은 토끼, 여우, 개 등의 사육과 관련된 산업 활동으로서 국내의 생산여건상 외국인의 투자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다. 토끼의 경우 사육농가의 수가 1987년 29,983호에서 1992년 15,463호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사육규모도 553,601마리에서 180,304마리로 급격히 줄었다.

이와같이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의 유입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이다. 여우의 경우 사육마리의 수가 4,000수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장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이다. 개 사육의 경우 사육호수가 100만호를 초과하며, 사육규모도 200만수를 넘어서는 등 비교적 시장규모도 큰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피업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축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투자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이다.

### 3.5.4. 복합농업

복합농업은 전문화율이 66%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문화된 선진 외국자본의 투자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촌지역의 급격한 이농 및 이에따른 노령화, 부녀화 현상등 농촌노동력의 질적 양적 감소 현상과 함께 농촌노임의 상승등 농촌노동시장의 변화등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의 유입가능성은 희박한 분야이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 관련 서비스업은 농기계임대업 등과 관련이 있는 산업활동으로서, 그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의 투자가능성이 희박하며 또한 관련업종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주요작물인 벼,보리 등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으며, 그리고 이미 농촌지역에 다용도 농기계가 개발 보급되는 단계에 있으며, 특히 농업노동자의 고용도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투자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5.5. 도축업

국내 도축업계의 시설 및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가동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업이 투자자유화 업종으로 분류된 것은 양축 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축업의 현대화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고기도매업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축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와 함께 국내 도축분야에 진출한 외국 자본은 육가공 분야 등에 까지 진출함으로써 그 활동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단순 도축 기능만 보유하고 있는 도축장들은 서비스 경쟁에서 뒤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들은 대부분 식육을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 해체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동율(도축능력에 대한 도축두수의 비율)은 20%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축시설의 낙후로 인한 위생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와 함께, 도축단계에서의 생축에 대한 강제급수행위 및 지육에 대한 주수행위가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점 등이 도축업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축업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축업의 현대화의 조속한 추진과 이를 통한 양축농가에 대한 서비스 향상 효과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축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도축장이 단순한 도축기능의 수행으로부터 탈피하여 도축, 가공, 비축 및 판매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계열화 사업의 중심체가 될 때, 도축장의 대농민 서비스 개선의 여지가 그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축업에 외국 자본이 진출한다면, 이와같은 도축, 가공 및 판매를 연계한 부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의 도축업계도 현대화 및 계열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3.5.6. 가금도살업

가금 도살업의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는 도축업의 투자 자유화와

동일한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도계장은 1992년말 현재 간이도 계장을 포함하여 전국에 73개소가 있으며, 이들 도계장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도축장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이와함께 비규격도계육이 유통되고 있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금도살업의 투자자유화 허용을 양계업의 투자자유화 조치와 연계하여 볼 때 생산에서 판매까지 계열화 경험을 갖고 있는 선진 외국자본의 진출이 예상됨으로써 국내 가금도살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선진 외국의 양계업의 경우 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료업, 양계업, 도계업, 육가공업 및 판매에 이르기 까지 수직 계열화 사업이 정착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본이 들어 올 경우 가금도살업뿐만 아니라 양계업등 양계와 관련된 각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가금도살업이 투자자유화 업종으로 분류된 것은 양계농가에 대한 서비스개선 효과 및 도계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3.5.7. 과실 및 채소 도매업

과실 및 채소도매업은 외국자본의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업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농산물유통상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청과물 유통분야이며, 이는 수요는 안정적인데 비하여 생산은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불균형 이에따른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현상에 기인한다.

이와함께 유통단계가 5-6단계의 다단계이며, 생산자 및 소비자가 유통에 참가하기에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나타나는 유통상의 불공정한 상황위도 청과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곤 한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이 부족하고, 따라서 도매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도매시장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유사도매시장에서는 소매상의 허가를 갖고 도매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위탁상 및 중간도매상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과 관련한 자료, 예를들면 거래량, 거래금액, 도매시장내의 종사자들의 거래행태에 관한 자료들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소 도매업의 경우 1992년말 현재 사업체의 수는 5,995개, 종사자의 수는 15,850명, 그리고 판매액은 1.6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사실들, 즉 현대화된지 못한 시설과 상관행 그리고 시장규모등을 감안할 때, 외국자본의 점진적인 투자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유화 업종으로 분류된 것은 청과물 도매업의 조속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의 확대를 통한 유통의 효율성 제고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3.5.8 과실소매업과 채소소매업

과실 소매업과 채소 소매업등 소매업은 농산물 유통부문중 정부투자가 가장 미미했으며 따라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낙후된 부문이다. 과실과 채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산물 소매조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여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이용측면에서 볼 때, 소매시장내의 소매상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주택가의 소매상 및 구멍가게등도 비교적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체의 수를 살펴 볼 때, 채소류 소매상이 2.2만 여개 그리고 과실류 소매상이 1.1만여개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으며, 점포당 판매액은 2,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거래량이 소규모이며, 대부분이 임차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노동 중심의 생계유지적인 경영특성등을 고려할 때, 첨단유통기법과 대자본을 앞세운 외국자본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통적 영세소규모 소매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3.5.9. 고기 소매업

고기소매업은 외국인의 투자가능성은 낮은 분야로 판단되나, 만일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면 국내 정육점의 규모의 영세성 및 전통적인 경영방식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도산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우 판매망에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고기 소매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정육점의 경우 대부분이 소매시장이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 4.4만개 업소가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육점은 규모가 영세하고 비위생적이며, 또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도한 이윤추구 동기는 소매단계에서의 부정유통을 유발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예로서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 쇠고기로의 전환 판대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기 소매업이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으로 분류된 것은 우선 외국자본의 투자가능성이 회복하라는 점과 함께 국내유통개선 및 경쟁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한우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 3.5.10. 비료도매업 및 농약도매업

비료도매업은 주로 농협에서 자체 계통사업으로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외국자본이 진출하더라도 판매망의 확보 또는 유통망의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자본의 진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다. 즉, 비료 판매업소의 수를 살펴보면, 농협계통이 1,380개 업소 그리고 비료업체 대리점이 450개 업소로서 판매망 측면에서 볼 때 농협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비료소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평야지대에 외국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설사 외국 자본이 진출하더라도 농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도매업이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상업종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농약 도매업도 비료도매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자본의 투자가능성이 적은 분야로 판단되고 있으나, 설령 외국자본이 들어오더라도 농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효과는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 3.5.11. 수의업

수의업의 경우 외국자본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및 사료업체 등이 이미 국내에서 활동중에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업체들을 통하여 국내 수의업 시장에 대한 조사도 이미 완료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의 수의업소들은 매우 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병원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현재 전국에 1,638개 업소가 개업중인 바, 이는 군당 평균 10여개 업소가 운영중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업종에 외국자본이 진출할 경우 수의업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도산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축농가에 대한 서비스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 자유화 업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중 국내 직접투자가 1997년까지 허용이 예시된 분야 및 유보될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업종만 살펴 보았을때 해당 업종의 생산능가 및 생산액등 각종 경제지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문제가 최종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그에 대한 피해 농가의 대책등에 관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온 측면과 비교할 때 앞으로 다가 올 자본이동 자유화의 문제는 외국자본의 국내생산 및 유통부문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 파급효과는 더욱 넓고 광범위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까지는 국내 농산물 시장의 문을 닫고 부분적으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여 온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외국자본이 국내생산에 직접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외국자본과 경쟁하고 유통부문에서도 경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농산물 개방문제가 농업보호의 명제를 지키기 위한 농산물 수입의 최소화 및 이에 따른 피해농가의 대책과 관련이 있었다면 향후의 문제는 농업보호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쌀까지 또는 쌀마저도 부분개방이 허용된 시점에서 외국자본의 국내농업생산 및 유통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질때 영세한 생산농가 및 유통업자들의 연쇄적인 도산과 함께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농업의 지배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 및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시 자본의 성격, 규모 및 그 역할등에 대한 세밀하고도 철저한 검토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방화가 피해만 가져올 것이라는 굳어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일이다. 즉, 우리가 우리 농업을 포기 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 개방도 결코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자신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농업을 되돌아 본다면, “농업이 보호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농업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개방이라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농업의 취약점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확대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개방이라는 거센 도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소명이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 1. 요약

이 연구는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가 우리나라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여 OECD 가입시 농업부문의 입장에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각 조항을 수락 또는 유보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상의 주요 원칙과 항목별 내용 및 기존 회원국들의 유보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이 국가간에 자유로이 이동할 경우 각 부문의 생산량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균형을 가정한 Ruffin의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모형에 우리나라의 실증적 자료를 적용하여 각 생산요소들의 가격의 변화를 요소집약도 및 요소투입계수의 변화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가 경제 전체 및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자유화의 현황으로서 외자 유입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외자 유입 예상치를 부문별로 전망함으로써 그에 따른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유화와 관련이 있는 국내의 제반 법규와 제도들이 국제화 시대의 제도 및 관행으로서 적합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상충되는 사항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외자 유입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한일간 농업부문 전체의 투자수익률을 산출하여 비교해보았다. 또한 농업부문의 업종중에서 외국인 투자 자유화 계획상 유보된 업종과 자유화 예정 업종별로 업계의 견해와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자유화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의 여부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문에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OECD 가입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지만 그 내용중 항목별로 자유화를 유보하고 국내 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문제이다. 주요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총 91개 항목 중 2 내지 73개 항목까지 유보하고 있어 유보율이 2.2%에서 80.2%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OECD 가입시 18개의 자본이동자유화항목을 유보한 상태에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수락하였다. 그 후 1973년까지 5차에 걸친 자본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시한 결과 농업, 광업, 피혁, 그리고 석유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하여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규정된 외국인의 100% 투자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어 아직도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직접투자부문의 6개 소항목(비거주자의 국내 직접투자과 거주자의 해외투자)을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자본이동자유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모형에 의해 “극단요소 공급량의 증가는 중간요소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다른 극단요소의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Ruffin의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요소투입 계수를 산출하여 실증적으로 적용한 결과 197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 요소투입계수가 토지, 노동, 자본의 순서로 나타나서 노동이 중간 요소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비농업부문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1980년대 이후에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상대적 요소투입계수가 토지, 자본, 노동으로 변화하여 자본이 중간요소, 그리고 토지와 노동이 각각 극단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외자가 유입될 경우 이자율은 하락하는 반면 지가와 임금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62년부터 1994년 상반기까지 모두 약 120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약 0.2%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농업부문 투자의 비중은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0.8%와 0.67%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과거보다 많이 자유화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가 곧 외국인 투자액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인 투자는 규제의 자유화라는 필요조건과 투자수익률이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외환제도개혁소위는 1999년까지 6년간 장단기 자본수지의 흑자폭은 직접투자액 78억 달러를 합해서 모두 2,2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록 산업부문별로는 추계되어 있지 않아서 농업부문에 대한 정확한 유입액을 산출할 수는 없으나 지난 30여년간의 평균 직접투자비율 0.2%를 적용할 경우 약 1560만 달러(약 125억원)의 직접투자를 포함해서 농지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 자금(hot money)이 농업부문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유입 이후 투기성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으로는 자본수지 전망치중에서 증시자금(463억달러), 채권시장 유입자금(450억 달러), 외화증권자금(338억 달러),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액(78억 달러) 등 모두 1300억 달러(약 104조원)에 달한다. 이는 1994년도의 우리나라 통화(M1) 28조원의 4배 가까이 되는 액수인 동시에 총통화(M2) 110조원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서 투기성 자금화를 막기 위하여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은

물론 재정정책까지 결합한 정책혼합(policy mix) 등에 의해 외환부문의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도 및 범규는 첫째, 투자된 자금이 용도외의 목적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둘째, 외국인 투자를 국내 산업의 선진화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합작 또는 기술 제휴' 형태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간 농업부문 전체의 자본수익률은 1965년 이래 두나라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전 기간 동안 한국의 투자수익률이 일본의 그것을 두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될 경우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일간 1982-1993년 기간의 농지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일본의 경우 논과 밭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이 각각 0.9%와 0.5%로 상당히 안정적이던데 비해 한국은 각각 12.7%와 17.6%로 높게 나타나서 농지가격의 절대수준에 상관없이 일본 자본의 투자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다섯째, 농업부문내 업종별로 살펴본 외국인 투자가능성과 예상효과는 업종마다 그리고 영농규모에 따라 그 예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인 사항은 지가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 농산물의 수입도 이미 자유화된 현재 굳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이었다. 또한 외국인이 직접투자할 경우 영세소규모의 생산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대신 외자에 수반되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의 전파에 의해 국내 농업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이룰 수 있어 국제경쟁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 2. 결 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로 개방화, 국제화 되는 세계 경제의 조류를 감안할 때 OECD 가입과 그에 따른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수락은 불가피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어 과거와 같이 정부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는 영농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의해 추가적으로 입을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낙농, 양돈 및 양계업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의 일반 생산 또는 사육에 직접 투자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전공학에 바탕을 둔 종목우, 종돈 및 신품종 등 육종분야와 가공 및 유통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의 계열화, 그리고 첨단 농업기술에 의한 농산물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본과 함께 도입되는 선진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에서 전파되는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접하면서 국내 농업이 선진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OECD 가입을 계기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는 정부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및 법규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체계(System)를 합리화, 효율화, 투명화시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비록 OECD 가입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수락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기존 회원국, 특히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자본이동자유화는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서 오히려 자원배분을 비능률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보장된 수락유보 조항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여 국내 자본시장 환경의 개선에 따라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자유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이미 발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상의 농업부문 자유화 유보업종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비거주자 직접투자 대상에서 유보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수락함에 있어 농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논, 밭 등 농지 가격은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비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로 유입된 외자가 언제든지 투기성 자금(hot money)으로 변하여 농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상 비거주자의 부동산 거래 및 거래의 청산에 관한 항목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자유화 유보함과 동시에 유입된 외자가 본래의 투자 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하고 치밀한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자의 유입이 투기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외환정책과 주식과 금리 및 통화채 등과 관련된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율 등을 조정하는 재정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일관성있게 운용되어 상호보완되도록 하는 이른바 정책혼합(policy mix)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취급하지 못하였으나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수요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제약조건이 좁은 농지 면적과 그로 인한 높은 농지가격, 영농 기계화의 제약 및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가격이 저렴하여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거나 또는 기계화에 의해 농작업의 성력화가 가능하다면 해외에서의 현지 투자 및 생산에 의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국제화 시대의 영농이 가능할 것이다. 비록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으로의 농업 이민과 해외농장개발사업 등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투자 및 이민의 여건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는 과거의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 농민과 농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호영, 「토지를 포함한 3요소 무역모형의 이론과 검정」, 서울대학교  
국제경제 학과 경제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경제기획원, 「우리나라의 대OECD 정책추진 현황」, 1994.
- 경제기획원, 「OECD 가입 준비자료」, 1994.
- 김남두,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환경의 변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정 책연구 91-17, 1991.
- 김영린, “자본자유화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운용”,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3. 11.
- 김명환외, 「고구마전분 관련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김시환·유찬우, 「일본의 자본자유화 추진과정과 특징」, 한국은행, 1991.
- 김인준, 「자본자유화에 관한 사례분석: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책연구 93-39, 1993.
- 김태준,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0.
- ,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 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농림수산부, 「가축통계」, 1994
- , 「농림수산 주요통계」, 각연도.
- , 「농림수산통계연보」, 각연도.
- , 「농축수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1991.
- 성배영 외,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백서」, 농림수산부, 1992.
- 손일대, 「자본시장개방과 환율정책」,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57호, 1989.

- 손정식 박대근,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37, 1993.
- 日本 農林水産省, 「포켓 農林水産統計」, 1993.
- 統計情報部, 「畜産物生産費調査報告」, 1994.
- 외무부, 「OECD 개황」, 1990.
- 외무부, 「OECD: 최근 동향과 우리 나라의 가입추진」, 1994.
- 윤호섭, 「OECD 가입과 한국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이재옥, 김동민, 「돈육의 수출촉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70, 1988. 12.
- 재무부, 「외자도입법」, 1994.
- , 「재정금융통계」, 1994.
- ,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재무부 고시 제1994-17호, 1994.
- 주용재 외, 「전분가공산업의 현황과 국산전분자원의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82.
- 중앙일보, 1994년 10월 12일자 및 11월 22일자.
- 최인범, 한정택,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분석」,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1-05, 1991.
- 최장봉,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 한국조세 연구원, 연구보고서 94-01, 1994.
- 축협 중앙회, 「1993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1994.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991.
- 표학길, 권호영,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자유화의 효과분석」, 대외경제 정책연구 원, 정책연구 93-34, 1993.
- Batra, R. N. and F. R. Casas, "A Synthesis of the Heckscher-Ohlin and the Neoclassical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76, 6, 21-38.
- Caves, R. E.,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1971, 38,

- 1-27.
- Chang, W.W., "Some Theorems of Trade and General Equilibrium with Many Goods and Factors," *Econometrica*, 1979, 47(3), 709-26.
- Clark, D.P. and H. Thompson, "Immigrati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Long Run Income Distribution in Canada," *Atlantic Economic Journal*, 1986, 14(4), 24-9.
- Dalal, A.J., "Using a GNP function to Obtain Comparative Statics for the Production Sector," *Economia Internazionale*, 1985, 38(3-4), 303-8.
- Dixit, A.K. and V. Norman,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0.
- Eor, M.K., *Analysis of the Effects of Changes in Factor Endowments on Income Distribu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DeKalb, Illinois, 1992.
- Jones, R.W., "A Three Factor Model in Theory, Trade and History," in J. Bhagwati, et al (ed),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1971.
- , "A Theorem on Income Distribution in a Small Open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18, 171-6.
- and S.T. Easton, "Factor Intensities and Factor Substitution in General Equilibriu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3, 15, 65-99.
- Mayer, W., "Short-Run and Long-Run Equilibrium for a Small Open 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4, 82(5),

- 955-67.
- OECD, *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1993.
- Ruffin, R.J., "Trade and Factor Movements with Three Factors and Two Goods," *Economics Letters*, 1981, 7, 177-82.
- Rybczynski, T.M., "Factor Endowment and Relative Commodity Prices," *Economica*, 1955, 22, 72-7.
- Samuelson, P.A., "Prices of Factors and Goods in General Equilibrium,"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53-4, 21, 1-20.
- , "Ohlin was Right,"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1971, 365-84.
- Stolper, W.F. and P.A. Samuelson, "Protection and Real Wag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41, 9, 58-73.
- Thompson, H. and Clark, D.P., "Factor Movements with Three Factors and Two Goods in the U.S. Economy," *Economics Letters*, 12, 53-60.
- USDA, *Agricultural Statistics*, 1993.
- ,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Cost of Production—Major Field Crops & LiveStock and Dairy 1991*, ERS, 1994.

연구보고 R304

##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 농업

---

---

찍은날 1994. 12.      펴낸날 1994.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